

# 의정활동보고서

제201회 임시회(2005. 9. 1 ~ 9.13)

경 상 북 도 의 회

##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의근 도지사님과 도승회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01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비회기중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현지 확인과 해외연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수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국제적인 테러위협과 유가상승, 국내 부동산 투기, 불법 도청  
정국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주변여건들이 서민들의 경제활동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과 방폐장 유치 등 당면한 현안  
과제는 다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풀어 나갑시다.

또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각종 재난예방과 병충해 방제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과 답변, 각종 안건처리에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제관은 도정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집행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예산안을 승인하며,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되풀이 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넉넉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포근한 고향의 맛과 정취를 느끼는 한편, 고향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제기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백만 도민은 물론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李 哲 雨

# 차 례

I . 개 황 .....

II . 의사일정 .....

1. 소 집 .....

2. 회 기 .....

3. 활 동 .....

가. 본회의 .....

나. 상임위원회 .....

III . 의안 처리 .....

1. 본회의 .....

2. 상임위원회 .....

IV . 민원 처리 .....

1. 청 원 .....

2. 진 정 .....

가. 접 수 .....

나. 처 리 .....

V.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 접수사항 .....

2. 조례 공포사항 .....

3. 위원회 활동사항 .....

VI. 기타사항 .....

VII. 도정질문 .....

VIII. 5분 자유발언 .....

## 부 록

### ☐ 조례안 .....

1. 경상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동의안 .....

1.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설립에 관한 건

### ☐ 결의안 .....

1.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노인 및 장애인 복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전국체육대회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규칙안 .....

1.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01회 임시회는 2005년 9월 1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하여 9월 13일까지 13일간의 회기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5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9월 1일(목)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도정질문(김정자·권종연·장대진의원)을 청취한 후 산회했다.

9월 2일(금)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는 개의하여 도정질문(김응규·김석호·박종욱의원)을 청취한 후 9월 12일까지 휴회하였다.

9월 13일(화)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김선중·이상태·김순견·장하숙·임원식의원)을 청취한 후 (재)경북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설립에 관한 건,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2005년도 의원 해외연수 활동 결과보고 2건,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등 결의안 3건, 특별위원회 위원선임 3건에 대해 의결하고, 3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를 끝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01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 Ⅱ. 의사일정

### 1. 소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 공고일 : 2005년 8월 18일(목)

라. 집회일시 : 2005년 9월 1일(목) 11:00

###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5년 9월 1일 ~ 9월 13일 (13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3회 (누계 82회)

○ 상임위 회의 : 5회

### 3. 활 동

가. 본회의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 고  |
|---------------------------------|-----------------------------------------------------------------------------------------------------------------------------------------------------------------------------|------|
| 2005. 9. 1(목)<br>11:00<br>(제1차) | 1. 제2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br>2. 경상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br>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br>4. 휴회의 건<br>5. 도정에 관한 질문<br>○ 김정자 의원(비례, 건설소방)<br>○ 권종연 의원(안동시, 기획과학) | 원안가결 |

| 개의일시                             | 심 의 안 건                                                                                                                                                                                                                                                                                                                                                                                                                                                | 비 고                                                                                                         |
|----------------------------------|--------------------------------------------------------------------------------------------------------------------------------------------------------------------------------------------------------------------------------------------------------------------------------------------------------------------------------------------------------------------------------------------------------------------------------------------------------|-------------------------------------------------------------------------------------------------------------|
| 2005. 9. 1(목)<br>11:00<br>(제1차)  | ○ 장대진 의원(안동시, 행정사회)                                                                                                                                                                                                                                                                                                                                                                                                                                    |                                                                                                             |
| 2005. 9. 2(금)<br>11:00<br>(제2차)  | 1. 도정에 관한 질문<br>○ 김응규 의원(김천시, 교육환경)<br>○ 김석호 의원(구미시, 행정사회)<br>○ 박종욱 의원(청송군, 교육환경)                                                                                                                                                                                                                                                                                                                                                                      |                                                                                                             |
| 2005. 9. 13(화)<br>11:00<br>(제3차) | 1. (재)경북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에<br>관한 건<br>2.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br>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br>3.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br>4. 경상북도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 재의<br>요구안<br>5. 2005년도 의원 해외연수 활동 결과보고<br>(2건)<br>6.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br>7.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br>8.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특별위원회 구성<br>결의안<br>9. 전국 체육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br>10.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br>11.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br>의 건<br>12. 전국 체육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br>의 건<br>13.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보고<br>(3개 특위) | 원안가결<br><br>원안가결<br><br>원안가결<br>가 결<br><br><br>원안가결<br>원안가결<br>원안가결<br><br>원안가결<br>원안가결<br>원안가결<br><br>원안가결 |

## 나.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개회의시                         | 심사안건 (내용)                                                                                                                                                                  | 비고                   |
|------------------------------|----------------------------------------------------------------------------------------------------------------------------------------------------------------------------|----------------------|
| 2005. 9. 1(목)<br>10:00(제1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li> <li>○ 경상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li> </ul>                                         | 원안가결                 |
| 2005. 9. 12(월)<br>10:00(제2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li> <li>○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li> <li>○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li> <li>○ 전국 체육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li> </ul> | 원안가결<br>원안가결<br>원안가결 |

### 〈기획과학위원회〉

| 개회의시                        | 심사안건 (내용)                                                                                                                                                                | 비고   |
|-----------------------------|--------------------------------------------------------------------------------------------------------------------------------------------------------------------------|------|
| 2005. 9. 2(금)<br>10:30(제1차) | ○ (재)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설립에 관한 건                                                                                                                                               | 원안가결 |
| 2005. 9. 5(월)<br>~9. 7(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산 경북TP, 영남대 R&amp;D 클러스터</li> <li>· 구미 디지털전자정보산업단지, 도래이새한</li> </ul> </li> </ul> |      |

### 〈행정사회위원회〉

| 개회의일시                      | 심사안건 (내용)                                                                                                                                                                                                                                                                                                                                                                            | 비고             |
|----------------------------|--------------------------------------------------------------------------------------------------------------------------------------------------------------------------------------------------------------------------------------------------------------------------------------------------------------------------------------------------------------------------------------|----------------|
| 2005. 9. 8(목)<br>~ 9. 9(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도읍 육성사업추진 현장(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지개발사업</li> <li>- 오십천 명소화사업</li> </ul> </li> <li>· 사회복지시설(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여성회관 운영실태</li> <li>-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현장</li> </ul> </li> </ul> </li> </ul> | 영덕군<br><br>포항시 |

### 〈교육환경위원회〉

| 개회의일시                       | 심사안건 (내용)                                                                                                                                                                                                 | 비고                    |
|-----------------------------|-----------------------------------------------------------------------------------------------------------------------------------------------------------------------------------------------------------|-----------------------|
| 2005. 9. 6(화)<br>~ 9. 8(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친화마을(군위 효령 오천리, 부계 창평리)</li> <li>·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공사 현장</li> <li>· 교육정보센터, 학생야영장</li> </ul> </li> </ul> | 군위군<br><br>영천시<br>경산시 |
| 2005. 9.13(화)<br>10:00(제1차) |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 〈농정위원회〉

| 개회의일시                      | 심사안건 (내용)                                                                                                                                           | 비고 |
|----------------------------|-----------------------------------------------------------------------------------------------------------------------------------------------------|----|
| 2005. 9. 5(월)<br>~ 9. 7(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도 복숭아시험장,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li> </ul> </li> </ul> |    |

### 〈경제문화위원회〉

| 개 의 일 시                         | 심 사 안 건 (내 용)                                                                                                                                              | 비 고  |
|---------------------------------|------------------------------------------------------------------------------------------------------------------------------------------------------------|------|
| 2005. 9. 7(수)<br>10:00<br>11: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li> <li>○ 현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천 임고서원, 은혜사</li> </ul> </li> </ul> | 원안가결 |

### 〈건설소방위원회〉

| 개 의 일 시                     | 심 사 안 건 (내 용)                                                                                                                                                                                         | 비 고 |
|-----------------------------|-------------------------------------------------------------------------------------------------------------------------------------------------------------------------------------------------------|-----|
| 2005. 9. 5.(월)<br>~ 9. 7(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도~경산간 도로 확장공사</li> <li>· 가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li> <li>· 모암1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li> <li>· 안동소방서</li> </ul> </li> </ul> |     |

### Ⅲ. 의안처리

#### 1. 본회의

| 구 분         |           | 부 의        | 심의 · 의결    |            |      |     | 철 회 | 계 류 | 비 고 |
|-------------|-----------|------------|------------|------------|------|-----|-----|-----|-----|
|             |           |            | 계          | 가 결        |      | 부 결 |     |     |     |
|             |           |            |            | 원 안        | 수 정  |     |     |     |     |
| 계           |           | 9<br>(336) | 9<br>(332) | 9<br>(293) | (37) | (2) | (2) | (2) |     |
| 조<br>례<br>안 | 소 계       | 4<br>(162) | 4<br>(160) | 4<br>(140) | (19) | (1) |     | (2) |     |
|             | 의회<br>제안  | 1<br>(17)  | 1<br>(17)  | 1<br>(7)   | (9)  | (1) |     |     |     |
|             | 도지사<br>제출 | 2<br>(117) | 2<br>(115) | 2<br>(107) | (8)  |     |     | (2) |     |
|             | 교육감<br>제출 | 1<br>(28)  | 1<br>(28)  | 1<br>(26)  | (2)  |     |     |     |     |
| 예산 · 결산     |           | (30)       | (29)       | (15)       | (14) |     | (1) |     |     |
| 동의 · 승인     |           | 1<br>(82)  | 1<br>(82)  | 1<br>(81)  | (1)  |     |     |     |     |
| 건의 의안       |           | (12)       | (12)       | (11)       | (1)  |     |     |     |     |
| 결 의 안       |           | 3<br>(15)  | 3<br>(15)  | 3<br>(14)  | (1)  |     |     |     |     |
| 기 타 안       |           | 1<br>(35)  | 1<br>(34)  | 1<br>(32)  | (1)  | (1) | (1) |     |     |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 〈부결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박승학의원의외 14인 발의, 2003. 9. 2, 본회의)
- ② 경북·대구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김정기의원의외 16인 발의, 2004. 9. 1, 의회운영위원회)

### 〈철회 안건 현황 : 2건〉

- ①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철회안  
(김정기의원의외 32인 발의, 2004. 7. 2, 본회의)
- ② 2005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  
(박영화의원의외 20인 발의, 2005. 6. 9, 본회의)

### 〈계류 중인 안건 현황 : 4건〉

- ① 경상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2. 10. 15, 행정사회위원회)
- ②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3. 9. 8, 기획위원회)
- ③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④ 경상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경상북도지사 제출, 2004. 7. 1, 미상정)

## 2. 상임위원회

| 위원회        | 회부         | 심 사 · 의 결  |            |           |           |      |           |           |     | 철 회 | 계 류 |
|------------|------------|------------|------------|-----------|-----------|------|-----------|-----------|-----|-----|-----|
|            |            | 가 결        |            |           |           |      |           |           | 부 결 |     |     |
|            |            | 계          | 조 례        | 예산<br>결 산 | 동의<br>승 인 | 건의   | 결 의       | 기 타       |     |     |     |
| 계          | 9<br>(338) | 9<br>(330) | 4<br>(160) | (29)      | 1<br>(82) | (12) | 3<br>(15) | 1<br>(32) | (2) | (2) | (4) |
| 의 회<br>운 영 | 5<br>(16)  | 5<br>(15)  | 1<br>(7)   |           |           |      | 3<br>(5)  | 1<br>(3)  | (1) |     |     |
| 기 획<br>과 학 | 1<br>(26)  | 1<br>(25)  | (14)       |           | 1<br>(7)  | (2)  | (1)       | (1)       |     |     | (1) |
| 행 정<br>사 회 | (90)       | (89)       | (62)       |           | (24)      | (1)  | (2)       |           |     |     | (1) |
| 교 육<br>환 경 | 1<br>(47)  | 1<br>(47)  | 1<br>(34)  |           | (11)      | (1)  |           | (1)       |     |     |     |
| 농 정        | (20)       | (20)       | (7)        |           | (11)      | (2)  |           |           |     |     |     |
| 경 제<br>문 화 | 1<br>(46)  | 1<br>(46)  | 1<br>(20)  |           | (22)      | (2)  | (2)       |           |     |     |     |
| 건 설<br>소 방 | (22)       | (22)       | (12)       |           | (7)       | (2)  |           | (1)       |     |     |     |
| 특 별        | (30)       | (30)       |            | (29)      |           |      |           | (1)       |     |     |     |
| 본회의        | 1<br>(41)  | 1<br>(36)  | 1<br>(4)   |           |           | (2)  | (5)       | (25)      | (1) | (2) | (2) |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IV. 민원처리

### 1. 청원

| 구 분 | 접 수 |     |     | 처 리 | 처리중 |
|-----|-----|-----|-----|-----|-----|
|     | 계   | 이 월 | 금 회 |     |     |
| 금 회 |     |     |     |     |     |
| 누 계 | 1   |     | 1   | 1   |     |

※ 누계는 제7대 의회 실적

### 2. 진정

#### 가. 접 수

| 위원회        | 계           | 행 정       | 사 회<br>문 화 | 교 통  | 건 설       | 교 육 | 경 제 | 환 경  | 농어업  | 기 타       |
|------------|-------------|-----------|------------|------|-----------|-----|-----|------|------|-----------|
| 계          | 13<br>(133) | 1<br>(15) | 2<br>(15)  | (12) | 9<br>(31) | (9) | (9) | (14) | (12) | 1<br>(16) |
| 의 회<br>운 영 |             |           |            |      |           |     |     |      |      |           |
| 기 획<br>과 학 | 7<br>(13)   |           | (1)        |      | 7<br>(8)  |     | (2) |      |      | (2)       |
| 행 정<br>사 회 | 4<br>(20)   | 1<br>(10) | 1<br>(4)   | (1)  | 1<br>(2)  |     |     |      |      | 1<br>(3)  |
| 교 육<br>환 경 | (26)        |           |            | (1)  |           | (9) |     | (13) | (2)  | (1)       |
| 농 정        | (9)         |           |            | (1)  | (1)       |     |     |      | (7)  |           |
| 경 제<br>문 화 | 1<br>(28)   | (2)       | 1<br>(10)  | (4)  |           |     | (7) |      |      | (5)       |
| 건 설<br>소 방 | 1<br>(34)   | (3)       |            | (5)  | 1<br>(20) |     |     | (1)  | (3)  | (2)       |
| 특 별<br>위원회 | (3)         |           |            |      |           |     |     |      |      | (3)       |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나. 처 리

| 위원회   | 처 리         |             |     |     |            | 처리중      |
|-------|-------------|-------------|-----|-----|------------|----------|
|       | 계           | 처 리         | 불수리 | 취 하 | 타기관<br>이 송 |          |
| 계     | 10<br>(129) | 10<br>(129) |     |     |            | 3<br>(4) |
| 의회운영  |             |             |     |     |            |          |
| 기획과학  | 7<br>(13)   | 7<br>(13)   |     |     |            |          |
| 행정사회  | 3<br>(19)   | 3<br>(19)   |     |     |            | 1<br>(1) |
| 교육환경  | (26)        | (26)        |     |     |            |          |
| 농 정   | (9)         | (9)         |     |     |            |          |
| 경제문화  | (26)        | (26)        |     |     |            | 1<br>(2) |
| 건설소방  | (33)        | (33)        |     |     |            | 1<br>(1) |
| 특별위원회 | (3)         | (3)         |     |     |            |          |

※ ( )내는 제7대 의회 누계

## V. 본회의 보고사항

### 1. 의안 접수사항

| 제 출 자<br>(제 출 일)              | 의 안 명                                          | 소관위원회<br>(회 부 일)       |
|-------------------------------|------------------------------------------------|------------------------|
| 경상북도지사<br>(2005. 8. 25)       |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에 관한 건                       | 기획과학<br>(2005. 8. 25 ) |
| 경상북도지사<br>(2005. 8. 29)       |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제문화<br>(2005. 8. 30 ) |
| 의회운영위원회<br>(2005. 9. 1)       | 경상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br>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회운영<br>(2005. 9. 1)   |
| 박승학의원외<br>19인<br>(2005. 9. 1) |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의회운영<br>(2005. 9. 1)   |
| 경상북도교육감<br>(2005. 9. 9)       |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br>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교육환경<br>(2005. 9. 9)   |
| 의회운영위원회<br>(2005. 9.12)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회운영<br>(2005. 9.12)   |
| 의회운영위원회<br>(2005. 9.12)       | 노인 및 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회운영<br>(2005. 9.12)   |
| 의회운영위원회<br>(2005. 9.12)       | 전국체육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회운영<br>(2005. 9.12)   |

## 2. 조례 공포사항

| 이 송 일       | 이 송 처         | 건 명                                   | 공 포 일       |
|-------------|---------------|---------------------------------------|-------------|
| 2005. 7. 14 | 경상북도<br>교 육 감 |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br>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2005. 7. 28 |
| 2005. 7. 14 | 경상북도<br>지 사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                     | 2005. 8. 1  |
| 2005. 7. 14 | 경상북도<br>지 사   |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br>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2005. 8. 1  |
| 2005. 7. 14 | 경상북도<br>지 사   |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br>개정조례              | 2005. 8. 1  |
| 2005. 7. 14 | 경상북도<br>지 사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br>개정조례            | 2005. 8. 1  |

## 3. 위원회 활동사항

| 위원회           | 일시(기간)                 | 장 소                                                 | 활 동 내 용                                                   |
|---------------|------------------------|-----------------------------------------------------|-----------------------------------------------------------|
| 기획과학<br>위 원 회 | 2005. 7. 18<br>~ 7. 20 | 경주월성·울진<br>원자력발전소외2개소                               |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br>원전관련시설 현장 방문                     |
| 행정사회<br>위 원 회 | 2005. 8. 7<br>~ 8. 13  | 베트남, 캄보디아                                           | ·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룡반마을<br>새마을 회관 건립현장 방문                       |
| 교육환경<br>위 원 회 | 2005. 7. 21<br>~ 7. 23 | 수산자원개발연구소<br>백석방과제<br>울진세계친환경농업<br>엑스포<br>민물고기 연구센터 | · 수산자원개발연구소, 민물고기연구<br>센터 시설 방문 및 울진세계<br>친환경농업엑스포 개막식 참석 |
|               | 2005. 8. 18<br>~ 8. 19 | 경주 CC골프장<br>마오나오션골프장<br>감포지역 해안일대                   | · 골프장환경관리 실태점검<br>· 농약잔류검사 시료채취과정 입회<br>· 적조대비 태세 점검      |

| 위원회           | 일시(기간)                 | 장 소            | 활 동 내 용                             |
|---------------|------------------------|----------------|-------------------------------------|
| 경제문화<br>위 원 회 | 2005. 8. 25<br>~ 8. 30 | 상해, 요녕,<br>안휘성 | · 2005동아국제여유박람회 참석<br>· 관광홍보 설명회 개최 |
| 건설소방<br>위 원 회 | 2005. 8. 16<br>~ 8. 17 | 가야산국민<br>관광호텔  | · 건설도시재난국 및 소방서 관련<br>업무 연찬         |

## VI. 기타사항

### ○ 2005년 제1차 국제친선교류

- 일 시 : 2005. 7. 13(수) ~ 7. 16(토)
- 장 소 : 일본
- 참 석 : 황상조 행정사회위원회간사, 장미향 교육환경위원회간사,  
권경호 의원, 권종연 의원, 장하숙 의원, 황복희 의원,  
김선중 의원, 신영호 의원, 김정자 의원, 이호근 의원

### ○ 제36회 경상북도4-H 야영대회 봉화식

- 일 시 : 2005. 7. 13(수) 20:00
- 장 소 : 문경시민운동장
- 참 석 : 정상진 농정위원회간사(축사)

### ○ 농협운영자문위원회의

- 일 시 : 2005. 7. 14(목) 11:30
- 장 소 : 농협경북지역본부
- 참 석 : 이용석 농정위원장

### ○ 제5회 장애인정보화경진대회 및 사랑의 컴퓨터전달식

- 일 시 : 2005. 7. 14(목) 15:00
- 장 소 : 구미1대학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축사)

○ 국학진흥원 장판각 준공식

- 일 시 : 2005. 7. 15(금) 11:00
- 장 소 : 국학진흥원
- 참 석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장

○ 2005년 제2차 국제친선교류

- 일 시 : 2005. 7. 18(월) ~ 7. 23(토)
- 장 소 : 베트남, 캄보디아
- 참 석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장, 강영서 예결특위간사, 정무웅 의원,  
이 달 의원, 김주연 의원

○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보고회

- 일 시 : 2005. 7. 20(수) 11:00
- 장 소 : 경주시청
- 참 석 : 최원병 의원

○ 2005년도 경상북도 여성대회

- 일 시 : 2005. 7. 22(금) 11:00
- 장 소 : 울진 청소년 수련관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축사)

○ 전국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제5차 임시회

- 일 시 : 2005. 7. 21(목)~ 7.22(금)
- 장 소 : 제주 라마다 프라자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울진 친환경 농업엑스포 개막식

- 일 시 : 2005. 7. 22(금) 17:30
- 장 소 : 울진왕피천 엑스포공원 주공연장
- 참 석 : 도의원

○ 육군환경보전 시범식 교육 참석

- 일 시 : 2005. 7. 26(화) 14:00~16:00
- 장 소 : 대구 동구 예비군훈련장
- 참 석 :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 대구·경북 지역발전협의회

- 일 시 : 2005. 7. 27(수) 07:30
- 장 소 : 그랜드호텔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8회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

- 일 시 : 2005. 8. 9(화) 18:30
- 장 소 : 울진종합운동장
- 참 석 : 이정백 부의장, 이용석 농정위원장 및 농정위원 9명

○ 교육포탈서비스 개통 및 인터넷교육방송국 개국행사

- 일 시 : 2005. 8. 11(목) 15:00~ 16:20
- 장 소 : 경상북도교육연구원(안동)
- 참 석 : 정보호 교육환경위원장, 장미향 교육환경위원회간사,  
권준택 의원, 김선종 의원, 박종욱 의원

○ 제60주면 광복절 경축식

- 일 시 : 2005. 8. 15(화) 10:00
- 장 소 : 독도
- 참 석 : 이철우 의장,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정무웅 의원,  
이상태 의원

○ 전국 시·도의장 협의회

- 일 시 : 2005. 8. 16(화) 09: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철우 의장

○ 하남성 교류 10주년 기념

- 일 시 : 2005. 8. 17(화) 19:00
- 장 소 : 인터불고 호텔
- 참 석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장, 한혜련 경제문화위원회간사

○ 북부지역 도의회과 출입기자 간담회

- 일 시 : 2005. 8. 17(수) 11:20
- 장 소 : 도의회
- 참 석 : 이철우 의장, 박승학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정상진 농정위원회 간사, 권종연 의원, 장찬식 의원, 장하숙 의원, 이현준 의원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5. 8. 18(목) 14:30
- 장 소 : 대전광역시의회
- 참 석 :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 제3차 경북체육회 이사회

- 일 시 : 2005. 8. 18(목) 11:00
- 장 소 : 경북체육회 회의실
- 참 석 : 채희영 경제문화위원장, 한혜련 경제문화위원회간사, 김정기의원

○ 21세기 낙동포럼

- 일 시 : 2005. 8. 24(수) 15:00
- 장 소 : 포항시그너스 호텔
- 참 석 : 손규삼 부의장

○ 2005년 을지 연습 위문격려

- 일 시 : 2005. 8. 24(수) 11:00
- 장 소 : 충무시설
- 참 석 : 이철우 의장, 안순덕 의회운영위원장,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 한나라당 경북도당 농촌봉사 활동 참석

- 일 시 : 2005. 8. 27(토) 11:00
- 장 소 : 문경청소년 수련관
- 참 석 : 이철우 의장

○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 일 시 : 2005. 8. 30(화) 07:30
- 장 소 : 그랜드 호텔
- 참 석 : 이철우 의장

○ 공공기관 이전 기본 협약식

- 일 시 : 2005. 8. 30(화) 11:3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이철우 의장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안) 공청회

- 일 시 : 2005. 8. 30(화) 14:00
- 장 소 : 대구시민회관
- 참 석 : 김기홍 의원

○ 전국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 일 시 : 2005. 8. 31(수) 11:00
- 장 소 : 인천광역시
- 참 석 : 이철우 의장

## VII. 도정질문

□ 2005년 9월 1일(목) 제1차 본회의

### ◎ 김정자의원 ◎

건설소방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201회 임시회에서 도정의 질문기회를 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의근 지사님과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에 노심초사하시는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북은 일대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할 만큼 지역복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당면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발휘하여 슬기롭게 난관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다 현명하고도 적극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통하여 3백만 도민의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이 드리는 도정질문은 보다 나은 경북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도민의 목소리임을 알고 시의적절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방폐장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북은 정부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선정」 기준 등에 대한 최종안 확정에 때를 맞춰 역내 방폐장 유치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일부 시군에서 방폐장 유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또 일부 시군은 유치결정을 시군의회에서 결정하였고, 그동안 도에서도 방폐장 유치를 위해 언론홍보 등 많은 활동을 해왔으며 방폐장 유치를 위해 경북도가 동의하는 것은 물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아마도 동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방폐장 유치가 관련특별법 제정으로 유치지역에 3,000억원의 정부지원금과 매년 50~100억원 규모의 반입 수수료 수입 및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전 보장, 그리고 양성자가속기 입지선정 등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유치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초단체들이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폐장 유치가 지역사회의 합리적 합의와 주민의 참여로 풀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3,000억원 플러스 알파라는 물질적인 혜택이라는 기준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혹여 모두 다같이 지

역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유치로 인해 주민과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주민과 주민간에도 갈등과 분쟁만을 낳아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경북도는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설득할 대책은 무엇이고,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도 모두가 도민의 의견인 이상 반대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고 또한 찬성이든 반대이든 지역주민의 하나된 합의를 만들어 낼 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포항·경주·영덕 등 3개 시군이 유치신청으로 가시화된 만큼 경북 동해안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도민의 참여방안과 향후 유치일정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전국적으로 20기인데 이중 울진지역 6기, 경주지역 4기 등 절반이 우리 경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건설될 원전도 울진과 경주에 각각 4기가 들어서게 되면 전국 원전의 56%가 경북에 있게 됩니다. 원전이 입지하고 있는 경주와 울진지역에 직접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내놓고 자랑할 만한 혜택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에 보장된 지원 외에도 경북도 차원에서 지역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해안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또 해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04년 3월 본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가 동해안 국도의 3배의 길이인 341km이면서도 11년만에 완공된 것과는 달리, 동해안 국도 7호선 확장사업은 겨우 134.6km의 길이를 가지고 자그마치 15년째 계속 되고 있으며, 그 공정도 50%대에 머물러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관계자의 주의를 엄중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북 북부권의 개발촉진은 물론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울진~영주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반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동해안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포항~울진간 국도 7호선 확장공사는 착공 17년째이며, 공정율은 고작 75%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환태평양 시대에 맞는 U자형 국토개발을 목소리 높인 것은 결국 돌아오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영주에서 울진에 이르는 국도확장사업도 울진군 서면에서 울진을 온양까지 19km 구간에 대해서 1998년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

지 아무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동해안의 모든 주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지역에 대한 정부의 소외정책이 계속될 경우 현재 참여정부가 부르짖는 국토균형개발은 한낱 정치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는 거짓임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단호히 말하건데 이제는 더이상 이렇게 동해안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말로만 환태평양 시대를 주창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해안이 환태평양 시대의 주요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남북간 물류와 금강산관광사업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동해안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집중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올해 초 우리 경북도가 강원도·울산시와 공동으로 동해권개발기획단을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설치하도록 건의한 것과 동시에 보다 강력히 동해안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원도와 울산시, 그리고 경북도가 주축이 되어 상호협력 하에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의 지원을 끌어내어 「동해안개발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진공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진공항은 지난 2000년에 착공하여 개항시기를 당초 2004년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005년으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2006년으로, 그리고 또 다시 최근 건설교통부는 2008년으로 재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해안 교통의 낙도인 울진지역 주민들의 기대에는 아랑곳없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말을 달리 하면서 지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울진공항의 개항시기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완공하여 새로이 개막되고 있는 저가항공시대와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사실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과는 달리 지난 8월25일 제주도에는 국내 애경그룹과 합작하여 제주에어의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청주에 있는 한성항공도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취득하여 이번 달 말부터 운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경북에서도 지난 4월12일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경북도와 대구시, 민간기업체가 공동으로 자본금 80억원 규모의 지역민간항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의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정도시건설, 공공기관이전 등과 함께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지난 2001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 이후 행정자치부는 각 시군에 설치된 읍지역 중에서 거주인구가 5만명을 밑돌고 주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율도 낮은 지역을 소도읍으로 지정고시하였으며, 현재 194개

소도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시군이 소도읍 육성대상 지구로 꼽히기 위해 사활을 거는 것은 지방행정의 중심이자 지역경제 거점이면서도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소도읍 발전을 획기적으로 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소도읍이 농촌정주체계의 건강한 중심축으로서 역할이 활성화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소도읍추진기획단의 역할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과 각 시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문체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타 사업과의 연계강화는 물론 주변 농촌지역과 연계되는 사업 계획 수립이 보다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 외국인 주부의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농촌 노총각에게 시집온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 출신 주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농촌 총각 4명 중 1명은 외국인 아내를 두고 있을 정도로 한국 여성이 외면하고 있는 농어촌 총각과 그 가족에게 외국인 신부는 희망이자 기쁨으로 이들은 농촌가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북도가 실시한 농촌거주 외국인 주부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는 모두 1,544명으로 이 가운데 농촌지역 거주 외국인 여성은 1,292명으로 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및 농지보유현황, 영농규모 등을 종합평가한 생활수준 조사에서 이들의 95%가 중하위 정도의 생활수준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더욱이 언어와 문화, 관습차이 등으로 한국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이들에게서 태어난 혼혈 2세는 피부색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기도 하는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 약자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인종차별과 혼혈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이들은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두려워하기까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 한국으로 시집와 살고 있는 외국계 농촌주부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진정 우리의 이웃으로 따듯이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최근 우리 경북도는 예산 1억8,5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에 농촌 거주 외국인 주부 25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컴퓨터, 요리, 취업기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뒤 확대하겠다는 소식은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 외국인 주부의 2세들은 언어미숙 등 성장장애와 외국인 엄마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외국인 주부들에게 또 하나의 어렵고도 심각한 문제의 핵심은 바로 2세들의 보육과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결혼한 농촌의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며, 한

국문화에 적응하는 것조차 힘든 이들에게 자녀보육과 교육을 떠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실시코자 하는 외국인 주부에 대한 한글교실, 요리교실 등도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지만 한 두 차례의 단발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초부터 1년 과정 정도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외국인 농촌주부들에게 지속적으로 한국문화와 육아·교육정보 등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주부 자녀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농어촌특별교육법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우리 경북은 환동해경제권의 혁신 교류 거점이라는 비전을 갖고 문화관광산업 등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문화관광산업이 우리 경북의 주요산업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북도는 2004년도 문화관광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관광개발사업으로 용암온천개발 14억9,000만원과 치산개발 2억6,800만원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으로 우구치 관광 휴양시설조성 4억원과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3억원, 등의 경우 예산을 받고도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다덕약수, 수하 반딧불이 생태공원과 운곡천 생태공원 조성 등은 예산집행이 30%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의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6대 광역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는 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입니다.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동안 총사업비 1조8,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가운데서도 청송군과 예천군에 지원된 예산집행이 미흡하며 안동시와 영주시는 예산의 일부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는 일선 시·군의 지역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본의원은 현재 개발사업단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연계 및 조정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사항인 농어촌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농어촌지역은 심각한 교육 문화적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탓도 있겠지만 자녀의 교육문제도 이농을 부추기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어촌에 대한 교육정책이나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면서 지금까지의 농어촌교육정책은 학교 통·폐합 정책이 주를 이루어 왔습니다. 즉 82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에서 2,922개의 학교가 폐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농어촌은 더욱 황폐화되고 농촌에서 옮겨온 학생들은 다시 도시와 일부 읍지역의 과밀, 과대학교를 증가시켜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시지역의 교육환경에 환멸을 느끼고 한적한 농촌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고자 하는 희망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젊은 귀농인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농어촌 지역의 교육문제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이라는 지역성과 소규모라는 규모의 특성이 농어촌 학교의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 나름대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새로운 장점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공교육 체제 안에서도 경기도 남한산 초등학교나 충남 아산의 거산분교 등과 같이 대안형 교육이 성공을 거두는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어촌교육과 도시지역의 교육문제를 동시에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만들어져 올바른 농어촌교육이 농어촌지역을 살리는 바탕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농어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어촌 근무 교원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등 교사의 잔무를 없애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하여 도서벽지에 한정된 지원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지원확대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권중연의원 ◎

안동시 출신 기획과학위원회 권중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의근 도지사님, 도승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경북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 최대 현안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작금 대통령의 연정 제의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 가계소득 면에서 하위 10%의 월소득이 1인 최저생계비 수준인 46만원에 불과한데 반해 최상위 10%는 711만원으로 무려 격차가 15배로 계층간 빈부격차와 양극화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어 사회 중산층이 이미 붕괴되었는가 하면 배럴당 70달러 돌파라는 사상 초유의 국제고유가와 달러강세, 수출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 불황속에 인플레이션 현상의 뚜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교육계의 비리, 횡령 등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사회현실 전반이 위기국면에 직면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2005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수년간 수도권과 충청권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크게 신장된 반면, 경북 일선 시·군의 경쟁력은 지난 2002년 이후 전국 10위권이 한 곳도 없어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전후의 맥락에서 볼 때 본의원은 이번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도정발전과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정어린 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시종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7.2%로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4%로 높아져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23.1%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노인인구가 도 전체인구 272만여 명의 12.3%인 33만4,000여 명이고,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1.7%로 전국평균 8.4%를 크게 상회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 복지시설 확충, 노인 취업대책 등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6월 현재 도 노인복지관련 시설현황을 보면 양로시설 12개소, 정원 699명에 현원 478명, 요양시설 21개소, 전문요양시설 14개소, 노인복지주택 1개소, 정원 40명에

현원 35명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노인관련시설에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은 노인인구에 비해 시설활용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향후 효과적 노인관련시설 활용 방안과 노인시설 확충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 노인복지예산을 보면 도 일반회계의 겨우 3%대의 수준으로 대단히 부족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을 증액한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노인복지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비 증액 지급,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경로당 식당운영, 노인건강진단 및 노인요양제도 추진, 노인회관 건립 및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급, 노인 일자리 창출 등입니다.

특히 본의원은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도의 노인복지의 정책방향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선, 공적 노인요양 체계구축,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보면 33억5,500만원,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익형 자연환경정비 등 1,919개, 교육복지형 문화예술사, 독거노인보호 등 556개, 자립지원형 택배 등 487개 총 2,962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형상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월 보수 20만원, 기간 6개월, 교육훈련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일자리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기존의 선심성, 소비성 단기정책에 불과했던 노인복지정책을 실효성 생산성 장기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노인들의 복지, 주거, 생산, 체육, 문화시설도 함께 갖춘 노인전용 복합단지의 조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여성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무려 49.7%대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도 여성인구가 전체 49.9%인 135만8,000명이며, 이중 여성경제활동 인구는 73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7.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경제활동의 질적인 면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복지정책 수준은 아직 미흡하여 획기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여성복지정책 추진현황을 보면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모자복지시설 지원 등 여성복지 프로그램이 대단히 지엽적이며 소극적 정책이라 평가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사회환경 여건에 적합한 포괄적·적극적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답변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 여성정책 예산은 총 740억4,0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46억

9,100만원에 비해 대폭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정책분야별 예산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예산을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여성일자리 창출에 중점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자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여성일자리 창출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선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경북의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경상북도를 잘 발전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또 그것이 바로 경북도민의 염원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현재 우리 경상북도는 경북발전을 견인할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선정이라는 중대결정을 해야 하는 도정사상 유례가 없는 긴박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7일 경상북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행정자치부장관, 산자부장관, 건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같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6월24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혁신도시를 각각 1개씩 건설하기로 하고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일괄 수용토록 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27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 지침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중앙정부의 집단이전 방식에 대해 각 시도는 기본협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이전 합의에 대해 갈등 양상을 보여왔고, 경상북도도 분산배치나, 집단이전이나에 대해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지난 30일 경상북도내에 혁신도시 1개를 건설해 집단 이전하며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이전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정부, 경상북도, 이전기관 간에 이전이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8월30일 이전이행협약 체결 전까지 중앙정부의 집단이전 방식에 대 견지해 온 입장은 무엇이었는데, 그리고 이전이행협약 체결 이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이행협약이 가결되고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경북으로 확정된 공공기관의 기능군별 분산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을 일괄 유치할 혁신도시로 모아지는데 혁신도시를 과연 어디에 어떻게 선정하고 건설할 것인지 도민의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에 경북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입지선정 지침 외에 별도로 마련된 다른 기준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는 정부의 입지선정 지침이 경북혁신도시 선정과 건설을 위해 과연 충분하고도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는지 집행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 부분에서 간선교통

망과의 접근성이 20점,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이 20점, 기존도시 인프라 및 생활편의 시설 활용가능성이 10점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간선교통망과의 접근성의 항목은 혁신도시가 2012년도에 완공될 미래형 도시라는 점과 또 정확하게 2012년도에 완공될 수 있을지도 본의원으로서의 의문이 큼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도로나 사회간접자본의 구조로 배점을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내 균형발전에 대한 배점이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 내에 10점 정도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연 이 지침에 혁신도시 선정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10%의 범위 내에서 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으며, 10점의 범위 내에서 새 평가항목을 넣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자율성이 어느정도 확보되었다고 할수 있겠지만 20명의 선정위원 중 10명은 이전기관의 추천에 의해 선정되므로 마음먹기에 따라 입지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같이 중차대한 결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지침이며, 또한 독소적 지침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 부여된 10여 명의 입지선정위원 위촉을 아무런 선정기준 없이 위촉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보안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본의원은 위촉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인적 구성을 위해서 선발과정 절차에서 반드시 정당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혁신도시 건설은 경북의 백년대계를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계획으로 중앙정부가 제시한 선정지침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미래의 혁신을 견인해 낼 도시선정에 구체적으로 부합하기 보다는 현실적 조건에 얽힌 졸속성이 보여지는 매우 불투명한 지침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입지선정 지침을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하겠지만 이전기관과 도민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렇게 해야만 도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입지선정 지침만으로 입지선정의 정당성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보며, 이로 인해 도민의 심각한 분열 갈등마저 분출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선정완료시한 즉, 9월30일까지 혁신도시 선정 완료를 도출하기는 현재로서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선정지침은 경북의 현실적인 입장과 조건, 그리고 도민이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것을 위해 집행부 관계자, 시·군 단체장, 관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 혁신도시 선정 경북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본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가칭 혁신도시 선정 경북협의회 구성을 제의하는 이유는 도의회로서 중차대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졸속을 방지할 책임과 예상될 수 있는 제반 문제를 사전에 적출하고 적시하며 갈등을 해소하여 경북의 진정한 통합을 이끌어 내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선정에 있어 집행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조언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며, 경북의 미래를 위해 선정 완료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치의 허술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경북지역 전략산업과 관련된 생물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경북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을 4대 권역별로 육성하기로 설정하고 구미, 김천을 중심으로 IT산업의 생산클러스터 구축, 경주, 포항을 중심으로 신소재 기술혁신 구축, 안동, 영주, 상주를 중심으로 생물한방자원 및 산업육성, 경산, 영천을 중심으로 대학, 테크노파크, 지식밸리로 나누어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집행부는 4대 전략산업의 하나로 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생물건강, 한방바이오, 해양생물 3개 전략분야로 특화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상주대, 포항공대, 경북해양생명환경지원센터 등 7개 혁신거점을 선정하여 생물농업, 기능성식품, 바이오신약, 한방소재, 해양소재자원개발, 해양심층수, 바다목장 등 9개의 중점사업을 포괄한 소위 'GB379혁신프로그램'을 제시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GB379 혁신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생물건강산업육성정책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북부지역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생물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원 설립, 혁신거점 선정 등 정책의 초점이 대체로 하드웨어구축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책실현을 위한 최근의 경향을 보면 하드웨어구축만으로는 결코 정책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생물산업 육성정책을 위해 실행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전략적 수단이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산업은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의 고부가가치 생산이 전망되는 산업으로서 이들 산업육성을 선도할 지식과 기술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비전과 목표가 있고 풍부한 연구인력과 연구환경, 그리고 강한 성취욕이 있을 때 비로소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고품종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생물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소속 의성의 신물질연구소, 영주의 인삼시험장, 봉화고랭지 약초시험장, 안동생물자원연구소 등 9개소의 연구소 및 시험장 등이고 이들 연구기관

들은 해당지역의 특작과 오랫동안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연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생물산업육성 기술기반 인프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들 연구기관들의 현재 조건으로는 그 기능이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9개의 연구소 및 시험장의 평균 연구인력이 4~5명 정도이고 연구소 및 시험장 전체 예산이 평균 4억원에 밀돌고 그 중 시험연구비가 평균 1억 5,000만원 내외로 맴돌고 있어 새로운 연구방향과 의제를 설정하고 추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들 연구소 및 시험장을 북부지역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경쟁체제를 갖추 수 있도록 연구환경 개선과 연구인력 확충, 시험연구비의 예산증액 등이 지원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개탄스런 우리 교육현실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교육이야말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계만큼은 정치계, 경제계 등 여타 사회의 어느 분야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그리고 책임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사표가 되어야 할 교사가 학부모와 짜고 시험문제를 유출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는가 하면 심지어 학교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교장이 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사회적 비난이 되고 있으며, 교육당국의 정책부재로 대입제도는 갈팡질팡하고 있고, 사교육비는 날로 치솟아 공교육 붕괴와 개별가계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우리의 교육현실을 걱정 하면서 폐교의 통폐합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4월 기준으로 지난 20년 간 경북은 학생들이 대도시로의 진학, 농촌인구의 급감 등의 원인으로 의성 45개교, 김천 30개교, 봉화·영천 각 25개교, 구미 11개교, 경산·울릉 각 5개교 등 총 527개교 학교가 폐교되어 매년 26개의 학교가 사라진 것입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의 매각, 임대, 자체활용 등 폐교활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폐교를 적절히 이용하여 노인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시설, 학생들의 수련장 및 야영장, 지역주민의 복지·문화·예술 체험장 등으로 통폐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보충질문】

○권중연의원 : 과학정보산업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학정보산업국장께서 바이오 산업분야와 그 다음에 지역전략 산업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북바이오 산업단지가 지금 얼마 전에 추진단이 결성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2008년도입니까? 물론 산자부 국책사업입니다만 거기에 경북개발공사하고 안동시하고 이행협약을 맺은 것을 알지요 국장께서, 작년도 7월에, 이행협약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행 협약서를 보면 7조인가 8조인가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노력을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국장께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미, 포항 경북이 상당히 성장된 도시는 민자유치라든가 상당히 국책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북 바이오단지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곳에 대기업을 오지 않으면 못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기업 유치를 누가 하느냐, 시·군에다가 맡겨 놓을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권중연의원 :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항상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서는 정말 이제 경북이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균형발전이 되는 그것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행협약을 작년 7월달에 했으면 지금쯤은 대기업하고 유치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해 보니까 삼성은 좀 힘이 드는데 LG정도는 좀 의사가 있더라 그래서 이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바이오 산업연구원에서 생산되는 연구과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완공 2008년도 되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고 상세히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데 착공이 들어가는데 기업유치 계획이 없으면 언제 기업을 유치 한다는 것입니까? 국장께서 대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더 해 줄 수 있습니까?

○권중연의원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북부권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략적 정책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인프라, 연구 인프라, 기술 인프라, 그 다음에 지식기반 인프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과학정보산업국에서 과제공모를 보면 2003년도에는 16가지였는데 2004년도에는 6가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소프트웨어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산도 늘이고 연구박사도 모셔놓고 좀 제대로 된 어떤 고부가가치 물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제는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행정 즉 집행부가 가야 될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복안이 있다면 복안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세요.

○권중연의원 : 국장께서 좀더 이 업무에 대해서 집중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노인복지, 여성복지

분야에서 제일 중점을 둔 질문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불황에다가 국정과 모든 것이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또 노인들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노인과 여성들을 위해서 정말 국고보조금을 받는 그런 도책사업을 열심히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일자리 예산은 너무 형식적이고 내용상 수치만 나오지 외형상 2,639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예산을 정말 제대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67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도 전체 노인복지 예산이 말이죠.

○권중연의원 : 전체 일반회계 3% 안 되는 것 인정을 하시지요.

○권중연의원 : 왜 경상북도가 우리 의의근 지사께서 노인복지정책에 더 정책을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 자료를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65세 인구가 20% 이상 되어야 초고령화 사회이지요. 맞지요? 전국 시·도별 노인복지 예산을 보면 도가 제출한 예산하고 틀립니다. 전국 4위라고 했는데 우리 경북이 전국 노인인구 현황이 얼마이지요. 경북이 전국에서 노인인구 현황이 어떻습니까?

○권중연의원 : 전국 3위정도 되지요. 그런데 예산을 전국 4위로 편성했다고해서 노인 복지 예산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그 부분 가지고 일치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구현황하고 일반회계 대비 노인복지예산 비율은 경북이 낮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우리 경북이 몇째인 줄 압니까? 물론 %는 경북이 2.90%, 제일 많은 곳이 충남, 전북, 8.3%도 있어요. 울산 같은 데. 물론 울산이 고령화 사회가 경북보다 늦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년도에는 노인복지 예산을 좀 올리세요.

○권중연의원 : 올리는데 정책제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 부담률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군에서 노인들 일자리 예산을 늘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되는 경상북도에서는 도비를 15% 부담하고 시·군비 35% 내면 노인 일자리를 못 만들어 내겠습니까? 원인이 재정적인, 예산적인, 구조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이것 바꾸면 노인 일자리 예산 바로 6개월 단기 취업할 것 10개월로 늘이고 그 다음에 월수당 10만원 줄 것 20만원 당연히 올려질 텐데 시·군이 못 따라 오잖아요.

○권중연의원 :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 일반회계 대비 7~8% 많으면 10% 정도 노인복지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이 나라에 직장에서 명예퇴직해서 나와서 취업 구조가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회가 선진국가가 되어서 명예봉사요원으로, 자원봉사요원으로 사회에 취업해서 좋은 건전문화를 만들 그런 풍토도 안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에서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예산을 늘려 주어야 되지요. 내년도에 반영을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으니까 노인복지 시설이 경상북도에 한 7~8군데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양로원, 전문요양시설을 포함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보면 청송, 영양, 문경, 경산, 울진, 울릉은 이 시설이 없습니다.

○권중연의원 :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양, 청송에도 불우한,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근교의 안동이나 어디 영주로 가서 주민등록을 옮겨서 가는지 몰라도 이 자료에는 지금 운영상에 없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도가 균형발전이 되자면 정말 요양시설이 없는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양로시설을 균형적으로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중연의원 :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성복지정책을 받으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지요? 도에.

○권중연의원 : 물론 경상북도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조사연구사업을 보면 36건인데 2002년도에 4건, '03년도에 6건, '04년도에 8건 이렇게 해서 36건인데 정작 여성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제는 연구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을 잘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정말 이제는 여성들도 일자리를 찾아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보건여성국이 좀 주력해야 될 때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중연의원 :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지사님 답변을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경북도정을 살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도시 유치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으로 정말 수고하셨다는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 문제는 저 뿐만이 아닙니다. 경상북도민의 관심사이고 경북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정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혁신도시 유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을 모시고 제가 궁금한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짧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연의원 :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사님께 몇 가지를 짧게 답변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도정의 책임자가 지사님 아닙니까?

○권중연의원 : 몇 개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합시다.

공공기관 이전을 한 이유는 국가의 균형발전 실현에 있지요?

○권중연의원 : 그래서 수도권만 벗어나면 공공기관 혁신도시가 지방으로 무조건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경북은 우리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해당지역의 낙후성, 그 다음에 장래, 그 다음에 우리 경북이 같이 살아야 될 그런 방향 그런 데서 이게 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중연의원 : 균형발전하고 낙후도는 어떻게 됩니까?

○권중연의원 : 그렇지요? 그럼 낙후도를 해소하는 게 거점성장도시를 만들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권중연의원 :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저걸 하십시오.

자, 지난 30일, 30일이 언제입니까? 어제 아레 아닙니까? 기본협약을 체결했어요.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이전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수성의 의미가 됩니까? 이 체결서에 특수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수성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권중연의원 : 그런 특수성, 원론일반적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사를 모시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특수성이 됩니까? 공공기관 혁신도시 하는데 어떻게 그게 특수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진행하면 다음 우리 장의원님도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개별이전 가능성을 험난한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열어놓았다.” 이랬어요. 왜 집단 이전이나, 개별이전이나,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이야기 협약과정에서 많은 분열을 하다가 왜 개별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는지 그 이유만 하나 좀 이야기해주십시오.

○권중연의원 : 자, 실장님 1안은 집단이전 맞지요? 혁신도시 유치하는 거 맞지요? 아니 도가 지금 추진하는 게 1안이 혁신도시 집단이전 맞지요? 공공기관하고.

○권중연의원 : 맞습니다. 그렇지요?

자, 이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위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지요? 입지선정위원회 명단을 공개를 안 해. 보안상, 특수한 업무 추진상. 그런데 이 혁신 도시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공개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렇지요?

만약에 이번에 지사가 임명하는 입지선정위원 10명중에 대구·경북통합 혁신도시 주장한 위원이 들어갔으면 지사가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권중연의원 : 대구·경북통합 혁신도시를 주장했던 대구·경북혁신위원들이 있어요. 그 분이 이번에 만약에 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혁신도시가 잘못 선정이 되었다 이랬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권중연의원 : 입지선정위원 위촉이 투명하고...

(○박승학의원 의석뒤에서 - 부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보충질문 시간을 좀 지켜주십시오.)

자, 기획관리실장님, 입지선정위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지요?

○권중연의원 : 정말 투명하고 중도적 인사이고 또 이 혁신도시 균형발전의 전문성을 가진 혁신적인 전문가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 경북도의 혁신도시를 선정하는데 잘못됨이 없이 바르게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 장대진의원 ◎

안동시출신 행정사회위원회소속 장대진의원입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분권화는 곧 무한경쟁을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느냐가 곧 그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은 과연 얼마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무한 경쟁시대에 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도정질문이 경상북도가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북도의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충성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농산물 종자전쟁입니다. 동식물유전자를 이용한 신약개발은 엄청난 고부가가치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종자주권시대를 맞이해서 선진국은 이미 유전자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 개발도상국의 동식물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가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경북지역의 일부 농촌현장에서는 정부가 2002년도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하면서부터 당장 내년 부터 외국산 종자의 딸기 출하분은 품종사용료, 즉 로열티를 물어내야 하는 지경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경북을 비롯해서 국내농가에서 재배하는 딸기는 그 90%가 일본품종으로서 이로 인해 딸기재배농가는 토종품종을 개발하기까지 당장은 한 해에 수 백 억원의 로열티를 물어야 하기에 우리 농가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화훼, 채소, 특용작물, 사료작물 등 전 품종에 확대 적용될 수밖에 없는 로열티 지급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충청남도농업기술원도 지난해 6월 자체로 개발한 딸기, 토마토, 구기자, 국화, 백합홍, 버섯 등 아홉 개 작물 41개 품종 등의 신품종을 국내외에 보급할 때 일정액의 로열티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그 받은 로열티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산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힌 바도 있어 이제 종자전쟁은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그 불뚝이 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상북도는 이 종자전쟁에 당당히 뛰어 들 수 있을 정도의 연구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북의 특허 등의 출원현황을 보면 농업기술원의 경우 4개 작목 56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농가보급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 특허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기술이전을

통해서 시장경제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축산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고유의 토종가축과 동물들에 대한 종자보전의 노력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동료 의원께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복을 피하고 기이 거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24일 176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경북지역에는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된 바 있고, 지난 30일 공공기관 이전이행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정에 따르면 조만간 공공기관입지선정위원회 출범을, 하반기 중에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동안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행 기본협약 체결의 지연,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지연까지 우리 경북도는 일정의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오히려 도민들에게 정책적 혼선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향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일정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우리 경상북도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중앙정부가 국토균형개발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절실히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중대한 당면과제입니다.

따라서 한 곳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북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분산 배치하는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아울러 이 기회를 발판으로 그동안 경상북도의 오랜 과제로 남아 있는 도청 및 도 산하기관의 이전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실 도청이전은 1995년의 선거 때는 물론이고 '98년 선거, 연속 주요공약으로 내세워왔던 것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세월만 보내다가 사실은 포기하고 지금은 오히려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론이 제기되면서 또한 아무런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북도 청사도 건물 노후화와 공간부족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식적인 도청이전 불가의 입장표명도 없는 상태다보니 신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 조금이라도 경북도민의 행정적 편의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경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난 2003

년9월 안동의 북부합동청사를 개청한 것을 종합청사로서 지속적인 기능 확충과 인력 보강을 하겠다고 말로만 계속하지 말고 여기에 당장 도 종합민원실이라도 신설을 한다면 북부지역 도민들의 면허, 허가, 여권, 민원접수 등 행정편의는 물론이고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을 하나하나 증진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 본의원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당장 이를 추진할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은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청과 공공기관이 같이 가는 방안이나 도청과 공공기관이 지역을 달리해서 배치되는 방안, 그 어느 방안이라도 이번 기회에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서 공공기관의 일선 시군에 대한 배치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도청과 도 산하기관의 이전을 유기적으로 결합 추진하여 경북 발전의 초석을 다질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신문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공기관 분산 배치를 주장하는 경상북도와 혁신도시 집중배치를 주장하는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의 입장이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일정 차질은 물론 양측의 마찰마저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전 입지선정 등 주요현안 결정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은 공동 보조를 취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으며, 개별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행기본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이전 대상기관 13개 노동조합협의회는 이행기본협약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거스르는 안으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등 현재 반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이전 효과 극대화과 혁신도시 성공 등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한 곳으로 집단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표리부동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공공기관들의 집단이전 요구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보다는 실제로는 지방의 열악한 거주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혁신도시 두세 곳으로 이전하는 것보다 한 곳으로 집단 이전하여 혁신도시 규모를 키우는 게 생활편의시설 등 거주여건 조성에 유리하다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잘 닦여진 광역시로 옮겨가는 공공기관 들에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도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북도 측에서 10명, 공공기관 측에서 10명을 추천해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자칫 입지선정위원회가 공공기관 측의 논리에 딸려가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공공기관 측의 입장이 과도하게 표출이 되어 경북도와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은 공공기관 이전이 가지는 목표를 흐리게 할 수 있기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 활동 시 어떠한 대책과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재선충 방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포항시 일대에서 대규모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후로 경주, 영천, 경산, 청도 등 남부지역은 물론이고 안동, 봉화, 울진 등 북부 내륙지역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주민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면서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의 신고가 쇄도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소의 경우 연구사 1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인력 2명, 총 3명이 올해 들어 6월말 현재 3,186점의 재선충 시료를 진단하였습니다.

이는 매일 20여건 이상의 시료를 진단하고 있었고 현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재선충병 진단은 하나의 시료에서 재선충이 발견될 경우 최소 4일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20여건에 이르는 시료를 채취, 진단하다보니 이들 1명의 연구사가 상근인력 2명과 같이 매일 새벽까지 일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여 일반신고사안의 경우에는 진단기간이 무려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선충병에 대한 근본적인 방제방법은 현재인력으로는 아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방제 연구 인력의 추가 확보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우리 경상북도는 지난 6월 산림행정수요의 증가 등 여건변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 등 산림자원 보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림보호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선충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직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충원 대신에 직접적인 사업집행기능도 없는 전담인력 3명만을 늘렸습니다. 오히려 특정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어주기에 그쳤다는 그러한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지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방제전문 인력은 전혀 충원을 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방제전문 인력의 충원 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넷째로 경북도립경도대학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도대학이 설립된 이후 해마다 교수채용비리로 교육부 감사 및 언론의 표적이 되어 왔고, 해를 거듭 할수록 더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비리를 저질러 ‘교수채용비리대학’이라는 대명사가 붙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는 전국 도립대학 중 유일무이하게 5명의 교수를 재임용 탈락시켰습니다. 그 당시 학장은 합법적인 기준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임용을 탈락시킨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다고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을 통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및 1심 법원에서 재임용 탈락 교수 5명은 전원 승소 하였습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명의 교수를

즉각 복직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았고 그 결과 교육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제재조치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립대학도 국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승복을 하는데 어떻게 경상북도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습니다.

또한 3명의 교수들이 1심에서 승소하자 경상북도는 사상 유례없이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해서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75년 이후의 재임용 탈락 교수들을 국회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구제를 하려고 하는데 경상북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묻고 싶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본의원이 생각건대는 현재 교육부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상북도가 패소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거니와 그들 모두가 승소했을 경우에 경상북도는 그들 5명의 밀린 봉급, 손해배상금 등을 포함해서 상당한 금액의 액수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교수들이 수업과 학생지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입은 손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학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현재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학장을 선임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장의 임기 만료 전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학장을 임용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도대학은 경상북도지사의 대학이 아니고 3백만 도민의 대학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만 할 것입니다. 미래를 짚어줄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환경 하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헌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경상북도의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건설도시국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광역시청 건설 본부 건설공무원 비리와 한국전력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경상북도 건설공무원도 동일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리베이트가 상존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도의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그 실태는 어떤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최근 3년간 비리 연루로 퇴직된 기술직 공무원 실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 발주 각종 하도급에 대해서도 의무적 하도급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도급 할 때 고위 건설 공무원의 알선 내지는 묵인 하에 하도급이 이루어진다고 추정하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특히 신제품, 신기술, 자재 채택 시에 비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그 사실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추석을 맞이해서

하도급 업체의 인건비 지급 등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교육청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학교급식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 2005년 현재 전국 723만 초·중·고 학생들이 매일 한 끼 이상의 학교급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학교급식이 급속하게 확대·운영됨에 따라서 수입식품을 비롯한 저질 식재료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식중독 사고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올해 초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학기를 맞이해서 학교위탁급식소와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해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우리 경북지역에서 11개 업소가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저질 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그 결과가 부실식단으로 나타나고 결국 이는 식중독사고 발생 등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도교육청의 「2005학교급식기본방향」에서도 우수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아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한다는 이런 글귀가 제일 첫머리에 기본방침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도상으로는 적격납품업체 선정에 있어서 학교급식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등을 심의하고 급식품 납품업체 참가자격 기준에 있어서도 업종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참여하도록 학교별로 자격기준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루에 한 끼 이상 학교급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더 강화된 학교급식 입찰자격이 모든 학교에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즉, 학교별로 입찰자격을 심의한다고 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식중독 사고 등과 같은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강화된 입찰자격기준을 마련해서 각 학교에 시달하고 권장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05년 9월 2일(금) 제2차 본회의

### ◎ 김응규의원 ◎

김천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응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법 아침저녁으로 시원해 진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300만 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시는 이의근 지사와 도승희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 북핵문제, 청년 실업문제,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가장 큰 3대 문제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 북핵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더 큰 틀로 접근해야 하겠지만 이 저출산 문제는 제일 앞서 가서 도정이라고 하는 우리 경상북도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990년에 들어서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출산 감소현상이 21세기 초반 들어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대체출산율 기준은 2.1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대로 라면 지구상에 몇몇 국가가 종래에는 인구가 줄어 멸망한 고대 로마처럼 나라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이 같은 저출산 신드롬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학계 출산율은 1970년도 4.53명에서 2005년 현 1.1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도 세계에서 꼴찌일뿐더러 2003년도에 1.19명에서 불과 2년 사이 현재 1.16명으로 줄어드는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 출산율은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측면이 우선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2년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된 후 1983년 학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1996년까지 출산억제 정책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진출 활동이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여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육아시스템, 지나치게 높은 사학교육비 부담 등은 한국을 세계 최저출산국의 타이틀을 안겨 주었습니다. 인구학회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2명으로 지속될 때 한국의 인구는 2015년 4,904만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서 35년 후인 2,040년에 4,287만명. 50년 후인 2055년 도에는 3,448만명 그리고 약 300년 뒤에는 2300년에는 31만4,261만명이나 감소되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2954년에는 단 한 명도 이 지구상에 한국인은 남지 않고 멸종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29명이고 한국보다는 높지만 저출산율이 먼저 시작된 일본은 인구 감소의 시점이 2007년으로 바로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지난해 15세부터 49세 가임여성 인구가 줄기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이면 생산 가능 인구인구 15세에서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4세 이하 유소년 보다 더 많은 초고령화 사회인 인구의 대 역전현상이 시작됩니다. 인구는 한번 줄면 회복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1.5명 이하로 떨어진 합계 출산율이 회복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사회 연구원이 실시한 2003년 전국 출산율 및 가족보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44세 기혼여성 6,599명이 응답한 평균 이상 자녀수는 2.2명이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여건만 마련되면 합계 출산율 1.16명을 2명 이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는 가능한 숫자의 단서입니다.

프랑스, 스웨덴은 1970년대 출산율이 계속 줄다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회복된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요즘 신 베이비붐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를 낳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스톡홀름의 버스과 지하철, 공원과 거리 곳곳에 어린 아이와 흔히 마주치는 곳입니다. 스웨덴 보건사회부 계획조정국장은 1990년대 초 깊은 불황으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경기가 회복되자 곧 올라갔다면서 이는 가족을 지원하는 튼튼한 사회보장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가족단체 연합회장은 프랑스에서는 1년에 한번씩 정부, 기업주, 노조, 시민단체 각종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가족관련회의가 총리주제로 열린다고 합니다. 수당을 좀 올려주고 휴가를 늘여주는 부분적 인센티브로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가족지원, 양육사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도 얼마 전에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위원회가 정부주도로 설치가 되고 관심을 갖게 되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앞서 드린 말씀 이외에도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일은 필수, 결혼은 선택’, ‘힘겨운 더블보다 편한 싱글’을 택하는 젊은 신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이 가족 붕괴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농어촌 지역의 이농현상과 고령화 사회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저출산 문제까지 겹쳐 인구는 더욱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에는 결혼 적령기 세대의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미혼과 만혼이 늘어나는 것과 출산 이후의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이유, 가치관의 변화,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출산율이 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수립 실천하여야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전혀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책의지가 어느 한 곳에서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출산장려금 몇 푼 지원한다고 출산이 늘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스웨덴과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

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도 베이비 시터를 즉, 아기를 돌봐주는 아주머니를 말합니다. 베이비 시터제를 등록하여 지원해 주는 방법과 유아 및 탁아 기능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과 다채롭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의 저출산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부로부터의 전국 광역시·도별 주요 정보화 관련 지수라는 자료에 의하면 2004년말 기준으로 경북의 인터넷 이용률은 59.4%로 전국 평균 70.2%에 비하여 떨어지며 PC 보급률은 전국 평균 77.8%인데 비하여 우리 경북은 61.8%로서 9개 도 지역 중에서 전남, 충남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1년 전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04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 조사에서 인터넷 이용률이 57.5%로 나타나 충남과 전남에 근소한 차이로 앞섰지만 전국 평균 68.2%에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치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고급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요즘과 같은 정보화시대에 요즘과 같은 이와 같은 정보의 격차는 곧 지역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미 2004년부터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등을 목표로 이른바 전자도정을 앞당긴다는 전략과제를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001년부터 정보화 확산, 정보격차의 조기 해소 주민소득의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여 2001년도 5개 마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5개 마을, 그리고 2004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11개 마을을 조성하여 총 31개 마을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여 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통계 자료는 우리 경북의 정보화 과정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많음을 의미하고 그 만큼 정보격차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 매우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2004년 10월에도 정보통신부의 자료에 의하면 정보통신 인프라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경북지역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47.4% 기록 전국 평균보급율 65.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겠지만 모든 전문가들은 IT와 BT가 꺼져가는 농업을 살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정보화의 발전없이 농촌지역의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하루빨리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발전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지역개발과 창의적인 지역개발 구상을 위해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 뒤에는 전국에 200여 정도 지역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한 곳에 시군구 특화된 상품이나 산업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지역특구 중복 지정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물론 지역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법적 제약을 해소 시켜 주는 것 일뿐 자동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거나 세제감면을 주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구로 지정된다면 지역이 가진 유무형의 부존자원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사업의 구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참여 유인 및 지역 특화브랜드 가치향상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14일 재정경제부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지자체 등의 요구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새로이 25개 사항의 규제특례를 추가 신설하고 지정관련 절차도 개선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특구지정을 위한 노력이 적극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의 경우 특구추진 총 40건 중에서 지정이 완료된 것은 영양 반딧불이 생태체험마을 특구, 안동 산약마을 특구의 두 건에 지나지 않고 영천 한방진흥특구와 상주 꽃감특구 두 건이 지정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에 비하여 올 상반기 8월말 현재 까지 전국의 25개의 특구가 지정되고 10여개의 특구가 신청 중이지만 이미 전북은 6개의 특구, 전남과 경남이 각각 3개 특구를 지정받은 것과 비교할 때 우리 경북의 경우 지역특구 발전 전략은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 우리 경북도내의 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 도차원에서 어떤 대책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정부의 계획과 같이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명목으로 매년 30, 40 개의 지역특구를 새롭게 지정하여 나간다면 결국 지정된 지역 특구의 차별성은 얼마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하느냐도 매우 중대한 사안일 것입니다 실제 지역특구가 목표한 대로 효과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수반되어야 하며, 규제완화 만으로는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구지정이 본 취지에서 벗어나 보여 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자체 재원이나 중앙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지원 재원, 민자 또는 외자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을 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특화발전 특수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재정경제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경상북도내 기초자치단체의 특구신청과 관련하여 특구신청 관련 자문 및 지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신활력 지역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 등 여타의 지역균형 사업들이 효율적인 연계와 종합과적 조정과 지원을 담당하고 각 지역개발사업들이 자칫 땅 투기를 부추기거나 무분별한 토목 사업과 난개발, 그리고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고 경상북도 전체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가칭 경상북도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테스크 포스팀으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의 수원시와 87만명의 부천시를 제치고 중소도시로는 전국 최초로 김천시가 전국체전을 유치하였습니다. 이제 2006년 10월이면 김천에서 대망의 제87회 전국체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이 경상북도 김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집행부 및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전국 체전을 계기로 이루어진 사회간접 자본의 투자, 그리고 2010년 고속철도 역사가 확정되는 등 김천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의 각종 사업비 가운데 50%이상이 시비 부담이여서 시비 부담이 가중, 사업의 차질은 물론 지역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 될 수 있습니다. 2006년 전국체전 총 사업비는 1,420억원으로 이 중에 국비가 223억원, 도비가 335억원, 시비가 862억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6%에 그치고 있는 김천시로서는 단기간에 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민생경제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각종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국·도비 지원액이 증액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국·도비 지원액의 상당부분이 2006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53억원 정도의 국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경기장의 신설과 개·보수, 도로망 확충 사업들의 조기 준공에 애로가 있어 조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정질문을 통해 동료의원님 질문에 지사의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 자료는 중복 질문이 될 것 같아 대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에는 13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 도시 유치는 물론 경북지역에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유치하려는 기초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과열을 넘어 위험수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에서는 서울과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주겠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특목고를 신설하여 이전기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전되는 기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지방세를 감면해 주겠다, 등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거나 제살 깎아 먹는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가 하면 심지어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유치에 실패할 경우 경상북도를 쪼개겠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이고 보면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가 오히려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지역이기주의만 극대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특수성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기관들이 전적으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30일 도청에서 이의근지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도로공사 사장 등 경북으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안을 체결하였습니다. 일괄 이전하여 혁신도시 입지 선정하는 것과 별도로 기본협약안에 따르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별이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명시 사실상 개별 이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입지평가 세부 기준 및 평가일정을 확정하고 나면 정부의 지침과 시도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작업을 벌인 뒤 이번 달 말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할 입지를 최종 선정하여 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 볼 때 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결정을 마무리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모든 지역들이 공공기관은 무조건 우리 지역으로 와야 한다면서 지역간의 대결구도와 반목현상만 극심해 진다면 공공기관 입지 이전이 확정된 뒤에도 그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공공기관 입지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틀림이 없습니다만 더 이상은 과도한 갈등과 분열은 우리 경북 전체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향후 공공기관 이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곧 구성될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가장 효율적이고 형편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이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반목을 자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경북은 하나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의 단결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김석호의원 ◎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출신 김석호 도의원입니다.

국정원의 도청파문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배럴당 60불대라는 장기 고유가시대의 도래는 IMF를 막 탈출하는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와 한양공대 전형탁 교수팀에 의한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인 원자층 증착기술의 개발은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과학 기술의 쾌거는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부부처들이 선출직 대기소로 전락하고 방만한 예산운용과 함께 이런 저런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 서민에게 혈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세정책은 국가불신을 조장하고 서민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는 없고 정쟁만 있는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눈앞이 캄캄해 질뿐입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올해는 아무쪼록 태풍과 홍수의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 경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경북은 도청이전을 바라는 3백만 도민의 바람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이 지지부진합니다.

도청이전이 결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도민들의 염원인 옹도 경북의 균형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에 의한 경북도정의 기획입안과 위탁운영이라는 박탈감에 우리 도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민선 3기 지난 10년 동안 경북도정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훌륭히 이끌어 오신 이의근 지사님께서 금번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도청이전의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자원빈국, 오직 사람만이 유일한 자원인 나라, 국민의 손재주와 기술이 오직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꿈과 희망인 나라, 그러나 도정은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 불이익과 차별대우 등으로 사기저하와 의욕감퇴로 인하여 자녀마저 이공계 진학을 기피시키고 있으며, 정부도 늦게나마 이공계와 기술직에 대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지금 본의원은 우리 경상북도의 이공계 우대정책과 기술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의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의근 지사님, 도승희 교육

감님, 그리고 도청 및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낙동강 및 낙동강유역 수계의 홍수 대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낙동강 유역에 거주하는 도민들께서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매년 소중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풍과 집중호우는 엘리뇨 등 지구촌 기상 이변으로 인해 더욱 잦아질 것이고 규모 또한 커질 것이라는 것이 기상전문가들의 공통된 예견입니다.

낙동강 수계지역의 도민들께서는 태풍과 장마가 집중되는 여름철이 되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으며,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관계 기관은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낙동강 수계권의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경상북도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낙동강은 하상계수가 372:1에 육박하고 상류의 모래 등이 끊임없이 하류로 이동하여 퇴적층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진 대표적인 천정천이기에 여름철에는 범람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양쯔강은 22:1, 독일의 라인강 경우는 8:1입니다. 게다가 개발의 미명 하에 강의 직선화가 이루어졌고 홍수를 예방할 수 있는 자연발생 습지는 90% 이상이 농토 등으로 개발되어 배후습지를 갖지 못한 불구의 강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배수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가운데 1987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구언 둑이 조성되었습니다. 하구둑은 낙동강의 배수능력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낙동강은 하구둑으로부터 60km 지역인 밀양 수산교 지역까지 거대한 호수로 변하였고, 남해로 배출되어야 할 퇴적물은 낙동강 중상류에서 그 흐름을 멈추어 강의 하상을 더욱더 높여 왔습니다. 혈관의 동맥경화에 다름 아니며 낙동강은 거대한 하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태풍 루사와 매미 등이 강타한 김천의 감천유역 등에서 귀중한 생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일으키고 현재까지도 완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의 배수능력에 문제가 있어 생긴 현상이며 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되풀이되는 상시 현상이 될 것이며 경북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의 금호강 수계, 경남의 남강 합류지점 등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해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은 하천의 제방을 보수하고 배수펌프 시설을 늘리는 등 임기응변식의 처방만 내릴 뿐 근본적인 치수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정부가 자신 있게 추진하려는 무리한 댐의 건설과 함안~마산만의 방수로 건설은 돌이킬 수 없는 자연환경파괴를 동반할 것이 분명하고 낙동강 수계에서는 더 이상 대형 댐을 건설할 지역이 없다는 것이 환경과 건설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본의원은 낙동강유역 홍수예방의 근원적 대책은 낙동강 하구둑의 해체와 하구둑으로 인해 높아진 하상의 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둑의 해체와 하상준설로 강은 통수단면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자연히 배수량이 회복되어 집중호우 시에도 강 본연의 기능인 유수능력과 홍수조절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낙동강 홍수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하구둑의 해체와 낙동강 하상의 준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상주, 안동까지 나룻배가 운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듯이 우리 3백만 도민의 젖줄 낙동강의 원형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이 자연재해 뒤에 숨어 있는 인재를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경북 관광 정책과 국내외 관광객 유입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미 세계의 관광문화레저산업은 세계무역거래량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자동차, 석유산업과 함께 세계 3대 산업으로 진입하였으며 매출 10억원 당 취업자 수가 52.1명으로 전체 산업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특히, 동북아가 21세기를 주도할 중심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관광산업 역시 2010년에는 연간 1억 명을 상회 할 정도로 급성장이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5일 근무제가 확대 도입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웰빙관광을 지향하는 엄청난 고급 관광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레저산업의 중요성과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각국과 국내의 여러 지역은 엄청난 재원을 관광인프라 구축과 상품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홍콩디즈니랜드가 금월에 개장하고, 싱가포르 동양의 모로코로 변신을 꾀하기 위해 카지노 2곳을 개장 준비 중에 있으며, 중국의 해남도는 골프관광패키지를 상품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지역도 영암체험관광 1천만평에 300억달러를, J프로젝트3,200만평에 30조원을, 새만금국제해양도시 2,000만평에 540홀 규모의 세계최대골프장 건설, S프로젝트 4억평 등 다양한 곳에서 엄청난 재원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관광문화레저 상품을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치열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의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경북은 관광문화레저 산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북 차원에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관광문화레저 상품은 무엇이며 교통 접근성 등 관광객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본의원은 미래 관광문화레저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3대 전제는 웰빙화, 광역패키지화, 체험화가 필수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경북의 정책과 대비하여 밝혀주십시오

또 경북의 교통접근성을 높이고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울진공항의 조속한 개항 대책과 예천, 포항공항의 활성화대책, 그리고 고속철 구미 김천 역사의 조기 건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경북의 차세대 성장산업과 특성화 산업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을 제외하면 모든 산업이 위기에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경북과 일선 시군 또한 저마다 산업 재편이라는 화두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과 일선 시군의 산업 재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모두 소위 첨단 무공해 산업인 IT, BT, 나노, 관광문화레저산업 일변도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기본적인 인적 물적 자원 편재는 무시하고 고부가가치이고 남이 하려는 좋은 사업이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는 각 지역의 중복투자로 이어져 막대한 시군의 예산낭비와 경북 일선 시군이 서로 경쟁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며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재원과 인력 투자의 집중화를 역행하여 경북의 웅비와 일선 시군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역의 특화산업 개발이라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선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편재와 재배치를 경북 차원에서 통괄 지휘할 수 있는, 산업의 혼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북특성화 산업재편 지도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산업은 미국, 일본의 차세대 성장산업과 대비 너무

근시안적 안목으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 인근 전북의 장류산업 같은 변별력 있는 특화산업의 개발이야말로 모범적이고 독창적인 산업이자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경북의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성장엔진을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넷째, 장기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정책의 수요와 공급, 개발은 국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겠지만 이제는 지역자치단체도 그 책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는 브릭스(Brics)라는 기초자원의 블랙홀이 출현 장기적인 고유가 시대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60불인 유가는 지구촌 북반구의 겨울이 시작되는 10월경이면 80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때, 우리 산업에너지원의 석유의존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19세기 말 석탄 자원이 고갈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류는 석유라는 대체에너지를 선택하였으며 21세기 초 다시 세계는 석유 대신 천연가스로 산업의 주동력원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차세대 주 에너지원이 될 천연가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십시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고 장기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면 국가의 존립과 기업, 개인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석유에너지 수요의 주범을 자가용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대중교통체계를 포기한 경북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경북은 자가용 운행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는 무엇이고, 차세대 에너지의 개발정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북의 인사 시스템에 관한 질문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공직자의 능력과 적성을 살리지 못하고, 이는 인사적체의 원인이 되며, 인사적체는 승진과 순환의 흐름을 막아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단초를 제공, 조직의 업무수행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인사 불만을 해소하고 탁월한 인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은 민선시대에 맞게 경북과 일선 시·군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인사 협약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북과 일선 시·군의 인사시스템은 지난 과거 관선 시절의 인사시스템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인사 문제로 담당국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도의회와 집행부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준 점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인사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사과행은 상호불신과 이기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원칙은 행정직렬과 기술직렬의 적절한 안배, 연공서열, 개개인의 능력이 서로 조화되게 적용될 때 가장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인사 기본방향과 시·군과의 협약체결 및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 서로 의견대립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 완충 조정역할을 할 지사님 보좌진의 부재로 금번 같은 인사과행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기술직 공직자의 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소외시킬 뿐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켜 자녀의 이공계 진학까지 막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지사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여 국가의 미래를 희망차게 열어가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구미공단의 교통접근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2004년말 현재 540여 만 평에 7만7,000여 종사자, 수출 275억불, 총생산 47조5,000억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국가4단지의 입주가 완료되는 2008년에는 수출 500억불, 총생산 80조, 고용인력 10만명이 예상되며, 구미시 인구는 50만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다행히 금년 7월 산호대교를 포함하여 4공단 진입로가 완성되었지만 2008년 30% 이상 늘어날 교통수요에 대한 대책은 구미시는 물론 경상북도에서 조차 전무한 상태입니다. 시내 강변로 등 공단진입로 일대는 교통 대란이 예견되어지고 그것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외국바이어의 입장에서 보면 영종도 신공항에서 다섯번, 여섯번 차량을 교체승차, 경유하여야 구미공단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후진국형 교통 시스템은 명실공히 내륙최대 수출단지인 구미의 성장에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구미국가산업공단의 화물과 여객의 교통접근성을 개선시킬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일곱 번째, 장애인 복지예산과 사회복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별에 저항하라” 1980년대에 대학가와 노동계의 구호가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의 2005년 슬로건입니다. 본의원은 소외되고 차별 받는 사람이 없는 사회가 선진복지사회의 완성이며, 2만불 시대를 준비하는 경북이 먼저 고민하고 먼저 풀어야 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북의 2005년도 장애복지예산은 경북 전체 예산 비율 중 1.1%에 불과하여 전남, 부산에 이어 최하위입니다. 경북의 장애인 비율이 4%로 전국 최상위층을 형성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경북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인접한 경남의 장애복지예산이 지난해 대비 63%나 증가한 것에 반해, 경북은

58%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은 추경예산을 반영할 것이다, 국비 108억원이 삭감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지방이행인 점을 생각하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증감폭입니다. 그리고 설혹 추경예산이 편성된다 하여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되어 장애인과 복지시설이 실제적 혜택을 입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생색내기용에 그칠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장애인을 무시한다는 해석만이 가능한 2005년의 장애인 복지예산 편성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고, 추경예산의 장애인 복지예산 편성과 2006년도 장애인 복지예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목적의식 고취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경북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지역이라는 한계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안은 채 자녀들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군이라는 서울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과외나, 가장 활발히 산업경제가 꿈틀거리는 경기도의 영어 원어민 체험마을 개장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북도 안동에 위치한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험가동 중이고, 영어 원어민 체험마을도 준비 중이라 하니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비록 낮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의 학생들은 이렇듯 교과학습에서도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지만 특히, 동기부여를 위한 체험학습 기회와 부재는 또 다른 형태의 좌절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교육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지식의 전달에 앞서 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목적의식 고취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학습 동기부여와 목적의식 고취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체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이 인터넷 과외나 영어 원어민 체험마을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우리 경북의 공무원과 관계자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문화스펙트럼의 세례를 받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화적인 충격과 다양한 스펙트럼의 직·간접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인생의 목표를 미리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비약한다면 운 좋고 환경 좋은 서울 학생들은 컴퓨터 백신을 개발한 안철수 사장을 직접 만나는 것만으로도 컴퓨터전문가의 꿈이라는 동기부여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스스로를 단련하여 자신의 인생을 미리 대비할 것이지만,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경북의 학생들은 어떤 기회가 있어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할지 자꾸만 격차가 벌어지는 이 현실이 억울하고 안타까워 자괴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의원은 우리 경북의 학생들과 서울의 학생들을 비교하면 떠오르는 암울한 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2년전 세계보건기구가 내어놓은 두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최장수국인 일본여성 아이코와 세계최단명국인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여성 마리암의 삶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런 비교가 저만의 지나친 상상의 비약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경북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목적의식 고취를 위해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스스로의 미래를 고민하고, 먼저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싶은 학부모의 한사람으로 교육감님께 그 대책을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급식과 결식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률적인 단체급식을 실행하다보니 학생들의 개인 성향과 취향에는 상관 없는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배식의 약 20%가 잔반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식량자원의 낭비를 떠나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학생들이 잔반을 많이 남기는 원인이 무엇이고, 학생들이 잔반을 남기지 않을 방도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결식학생들의 실태에 관한 사항인데 결식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단체 급식을 통하여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방학 중이나 공휴일, 일요일에는 어떤 식으로 식사가 지원되며, 경북 내에서 굶고 있는 결식학생이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 그런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면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한국이 과거에 매달려 안주하고 있을 때 우리의 경쟁국은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분열할 때 타 시군은 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번 8월 25일 정부는 충남 태안과 전남 해남, 영암을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추가하여 모두 6곳이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경북이 소외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 본의원은 이곳에 자리한 모든 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더욱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IMF보다 더 힘들다는 이때에 중앙정부와 지방이 앞다투어 공무원을 늘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일부 국민들은 한 끼를 때우기 위해 긴 줄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을 늘이고 세원 확충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라, 사회 복지비를 늘려 소외 받는 국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작은 질문이 희망찬 경북의 미래를 앞당기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망하며,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충질문】

○김석호의원 : 먼저 건설도시재난국장님께서 낙동강 중상류 평균 하상고가 22m 침하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원인으로는 유역상류 안동댐·임하댐에 의해서 유사 수송량이 차단되고 주요 하천유역의 임상이 양호해 지면서 지류부의 유사 수송량이 급격히 저하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영남대학교 교수님께서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영남대학교

교수님이나 국가공무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낙동강 상류에는 임하댐과 안동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천을 비롯해서 많은 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류들에서 흘러들어오는 퇴적물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다음에 제가 열흘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확인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께서 확인을 하시면 바로 확인을 해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전화번호 메모하십시오. ‘낙동강홍수통제소’가 부산에 있습니다. 거기 조사과에 ‘051-205-6342’입니다. 거기 전화하시면 분명히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골재채취라든가 등으로 인해서 일정구간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답변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강바닥 준설을 위해서 하구둑 상류 3km부터 삼락/동 수우관교/까지 7.3km 강바닥을 지금 준설하고 있고, 또 예산 176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127억원은 모래를 준설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52억원은 국가하천임을 감안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시간이 제가 촉박해서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석호의원 :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감천에 있는 감천 같은 경우에 일례로 거기에서 토사유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석호의원 : 구미에 가면 구미의 한양가든이라고 낙동강변의 비상나룻터에 한양가든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옆에 가시면 그 식당 옆에 거기가 굉장히 낭떠러지였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깊었거든요. 물이 시퍼렇고. 아시지요? 거기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김석호의원 : 그런데 지금은 모래가 거기에 다 쌓여 가지고 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댐을 만들면 지금 현재 구미에도 많은 저수지들이 있지만 저수지에 퇴적물이 쌓여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거기 준설을 못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낙동강 하구둑을 만들어서 퇴적물이 쌓이는 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공감할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김석호의원 : 지금 여기 아마 낙동강 유역에 사시는 도의원님들 전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김석호의원 : 알겠습니다.

아니 부산통제소에 051-205-\*\*\*\*로 전화 해보시라니까요.

○김석호의원 : 전화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낙동강이 지금 현재 감천같은데도 그렇고 바닥이 하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준설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석호의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에스, 노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진하고 예천, 포항공항이 포항공항 앞에 야산을 지금 들어내고 있지요?

○김석호의원 : 그걸 들어내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김석호의원 : 지금 울진공항이 1,290억이고 예천공항이 680억을 들여서 지난해에 청사를 준공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포항공항 앞에 임야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3,000억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혈세를 써서 지금 만든 공항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전부 나자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경상북도가 안 세우면 누가 세우겠습니까?

○김석호의원 :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울진공항 같은 레이더 하나만 설치하면 공항이 지금 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국제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국제선이 취항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엄청난 국민혈세를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서 교통접근성을 높여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상북도가 아무리 좋은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해도 서울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놀다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이 경상북도의 앞으로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 박종욱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년 6개월 되었습니다. 2년6개월 동안에 오늘의 현실에 와서 보면 혼란과 갈등과 정말 걱정스러움이 앞서는 현 시국에서 선출직으로 당선된 단체장이나 의원들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문제가 우리 북의 대표가 우리나라 현충원에 와서 방명록을 기재하고 묵념을 올리고 우리 남한쪽의 정당대표가 이북의 영웅묘원에 가 가지고 방명록을 하고 애국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한의 모든 대표들이나 인사들이 이북을 갔을 때 만수대에 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은 무한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연정을 제안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언의 강도가 높아지고 수위가 높아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정계개편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여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노·박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소신이 정계개편을 하지 않고 선거구도를 개편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도 거기에 수수방관 할 수 없고 자칫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대답에 응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모든 문제가 금년 연말이 아마 대통령이 사임을 배수진으로 치는 마지막 결단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자는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변혁과 국가기관의 광역자치단체권의 이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949년 정부수립 후에 제정되고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960년 지방자치법 개정의 선거로써 61년에 제2공화국에 지방자치는 중단되었습니다.

'90년 30년만의 지방자치 부활로 15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2005년 6월29일까지 20여 차례 개정되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문제는 광역은 국가사무의 지방적 처리기관으로 성격이 강하였고 자치적 측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업무가 기초로 위임됨에 따라 기능배분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시장 부군수를 내려 보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거부하니까 대책이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갈수록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이 기초로 이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조정해나갈 것인지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권한과 기능의 이양이 자치발전에 기여하고 곧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맞추어서 유관기관을 도 산하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올해 안에 이양계획인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해서 도에서 인수준비중인 것은 천만다행이나 현재 도내에 산재한 국가기관 및 유관기관을 보면 23개 시군 경찰서와 8개 세무서, 병무청, 체신청, 대구환경청 및 2개 출장소, 6개의 교도소, 출입국관리소 출장소, 2개의 세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을 비롯한 15개 출장소, 통계청 경북사무소와 5개 출장소, 4개의 기상대, 남부산림관리청 외 4개의 국유림관리소, 철도청 김천지역관리역 외 5개 관리소, 철도청 영주지역본부, 농협지역본부, 토지공사 지역본부 등 80여개의 정부산하 및 유관기관 이양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사께서 마지막 남은 임기동안 큰 변혁을 가져오는 역할을 기대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노인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보건위생개선으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출생률 저하현상으로 노인 수뿐만 아니라 노인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1980년에는 65.8세에서 2000년에는 75.9세로 연장되었습니다. 지금은 61세에 회갑의 풍속은 없어졌습니다. 적어도 70이 되어야 고희 때 회갑으로 간주하는 현실이 오늘의 노인현실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돌입함에 따른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경로연금제도도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는 국고보조사업이어야 합니다. 2005년 현재 경로연금 지급현황을 보면 경북지역에만 65세이상 34만8,758명 중 7만8,000명에게 예산액이 자그마치 367억에 1인당 3만5,000원내지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경로당의 실태를 보면 65세의 노인이 경로당 출입하는 사람 없습니다. 70세가 가도 신입생 취급을 받아 가지고 심부름만 합니다. 그런 오늘날의 노인정 현실에 노인정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80% 이상이 70이 되어야 노인연령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70세로 높일 경우 현재의 65세 7만8,000명에서 1만명이 줄어들어 금액이 367억을 분류하면 65세이상에 5만원 지급하여서 70세이상일 경우 6만1,000원이 지급 가능합니다.

차제에 경로연금 지급연령을 도에서 높이는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만약에 제가 제시한 문제가 어려우면 각종 정년을 연장시켜 노인인구를 줄이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13곳이 경북으로 이전되는데 지난 12일에 서울에서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13개 기관이 한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특목고 신설 등 교육시설과 도로교통 등 여건이 좋아진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나 도로공사 관계자는 한 곳에 모여 있어야지 분산배치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입지선정 문제는 처음에는 우리 도에서 김천, 구미와, 포항, 안동 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려고 했지만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정부입장과 공공기관의 의지가 강해져 가지고 두 곳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요구대로 한 곳에 밀집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며 최근 안동 등 북부 지역 11개 시군에서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인데 현재로서는 최소한 두 곳으로 잡고 있으면 상주에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13곳 가운데 10곳 정도를 입주시키고 기술관련 공공기관 3곳 정도는 포항쪽으로 입주했으면 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지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위원 문제도 경북도에서는 추천 10명, 공공기관에서 추천 10명 등으로 구성, 위원장은 H씨로 내정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H씨가 어제 대구추진 위원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북도 10명은 경북대, 영남대, 대구대 교수와 테크노파크 등 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 13개 기관이 연합해서 노조에서 3명, 공공기관에서 7명 추천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라면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해야지만 불투명하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집중배치냐, 분산배치냐를 놓고 논란이 치열하게 좀처럼 결론이 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을 밀어붙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은 경북도에서도 한 곳으로 갈듯한데 경북도의 입장은 과연 어떠하신지,

그 다음에 경도대학 문제는 이야기 안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이게 태어나지 않아야 할 대학이 경도대학입니다. 그렇게도 10년 전에 반대 하고 반대하고 해도 자신있게 주장하고 하던 것이 사실상 도의 주장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의 입김에 중앙정부인사의 입김에 도에서 할 수 없이 이 경도대학이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앞으로의 지역사정을 봐서 인재자원이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그 다음에 우리 경북도에서 부담할 액수 등등 감안해서 이것만은 정말 막아야 된다고 제가 했는데도 그 당시에, 지금 한나라 전신인데 그 당시의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내려와 가지고 무수하게 압력을 넣어서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경도대학 학장의 임기가 끝나고 비운지 오래 되었습니다. 아직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질을 빚고 있는데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교수 5명은 현재 법원 또는 소청심사에 계류 중이고 2학기가 다가왔는데 학장이 없다는 것이 10월이면 학생들의 취입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할 터인데 일선에, 그러면 지사께서는 서울에 가서서 전직관료출신 두 분을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성사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중앙에만 인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

에서라도 대학을 맡길만한 인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매듭을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지사님께서서는 우리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나 해야 됩니다. 도민이 가장 궁금해 하고 가장 관심이 많고 또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격려하고 싶고 또한 현재 보다는 더 잘되어야 되겠다 하는 도민들의 열망입니다.

지사의 퇴임 후 거취문제인데 13년입니다. 13년을 지사로써 마감하면서 그동안 도와준 우리 도민에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퇴임하고 어떤 역할을 하실지, 생각을 가졌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VII. 5분 자유발언

□ 2005년 9월 13일(화) 제3차 본회의

### ◎ 김선중의원 ◎

안동출신 교육환경위원회 김선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4호 태풍 나비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빠른 복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의정치의 폐단은 의원개개인의 지역이기주의 내지는 특정집단의 이기주의를 무조건 앞세운 점을 먼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역이기주의 발로인지 아니면 행정권의 한 특정지역을 말살하려고 하는 대에 대한 저항인지 내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안동에는 안동댐과 임하댐 등 두 개의 규모가 큰 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사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동댐이 건설된 1976년 당시만 해도 대규모 다목적 댐이 가져다주는 피해를 미처 예측하지 못했고, 국가재정이 빈약하던 때라 주민들에게 주어진 직·간접 보상은 터무니없이 작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은 임동과 서부 이주단지를 중심으로 전체 주민이 겪는 고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 안개와 서리의 피해, 일조량의 부족 등으로 인한 주민 건강의 위협 등 모든 것이 주민들의 부담으로 남아 있고, 이는 주민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보고된 사실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2년도에는 인근 임하댐이 건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누적은 설상가상 정도가 아니라 인구가 10만명 이상으로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주민들마저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임하댐으로 인한 피해는 앞서 예로든 피해뿐만 아니라 탁수문제까지 겹쳐 안동이 물의 도시에서 이제 물마저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며칠 전 보도 내용에도 보신 바와 같이 임하댐은 홍수시 위험하다는 판정까지 받은

실정입니다. 실제 임하댐 바로 아래 상수도 취수보를 두고 있는 안동시는 흙탕물을 걸러 내는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은 맑은 물맛을 본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취수원에 길한천에 맑은 물이 다소나마 회석을 시켜주어 상수원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이 길한천 상류에 길한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당초 예정지에서 불과 몇 KM떨어진 청송군 안덕면에 성덕댐이라는 이름을 고쳐 댐 공사를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만, 명칭만 청송으로 바뀌었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안동지역민이 안아야 하는 눈뜨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한천은 강의 고장 안동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연하천입니다. 이 하천을 막고도 안동이 아닌 곳에 댐을 건설한다는 논리라면 누가 행정당국을 믿겠습니까? 당국의 성덕댐 건설이유는 길한천에 홍수를 조절하고 포항과 영천 등지에 용수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의 용수공급은 수천억원을 들여 임하댐에서 연결되는 도수로 공사를 해서 실패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도수로 공사 역시 엄청난 공사비의 낭비는 물론 공사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 지역주민에게 상처만 깊게 파 놓고 포항 영천지역에는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길한천을 막아 댐을 건설하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정서상 이를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폐장 건설의 예를 보더라도 해당 지역 3,000억원 플러스알파를 지원하겠다는니 특정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니 주민 무마책이 요란합니다. 그러나 댐 건설로 분노가 충천한 우리 지역에는 정작 행정기관 스스로 공공기관이 가야 한다거나 현실적인 지원 대책 하나로 제대로 내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홀대하는 정책일 뿐입니다. 이런 본의원의 항변에 혹자들은 댐건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동댐의 경우 지원금의 87%, 임하댐의 경우 73%가 공공시설 도로와 농로개설 등의 확포장에 사용되었고, 주민들의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전혀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댐지역이다 해서 특별히 더 많은 도로사업 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포장도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댐건설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 당한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민 전체가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고 이 짐이 국가발전을 위한 희생이라면 국가는 당연히 이 지역을 위한 정당한 보상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북부지역민을 위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서 마저 북부지역이 배제된다면 그때 터져 나올 주민들의 분노는 견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서인들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엄청나게 홀대 받던 영남 남인들을 대변해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 당시 경상도 관찰사는 영남 우려론을 조정에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신판 경북북부지방 우려론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지역민들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기 전에 이를 제대로 다스려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만약 국가정책상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확한 파급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변 지역 지원정책 등에 반영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되 단순히 피해지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확고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넉넉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상태의원 ◎

울릉군 출신 행정사회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6일에서 9월7일에 있었던 태풍 제14호 나비가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울릉도를 다녀 왔습니다. 울릉도는 넓고 넓은 동해바다의 외로이 홀로 서서 국토를 수호하고 있는 동해의 유일한 섬으로 약 3,755가구에 9,200여명이 살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만 태풍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2003년 9월26일에 있었던 태풍 제14호 매미때에는 인명피해 5명으로 그 중 사망이 1명 실종이 2명, 부상이 2명으로 이재민은 68세대에 167명이었으며, 재산 피해만도 주택 및 도로, 수산시설 등을 비롯하여 354억4,2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는 울릉도의 피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액 354억4,200만원의 184%나 되는 653억3,900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되어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행하게도 금년도에 또다시 14호 태풍 나비가 울릉군 서면 일대를 강타하여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지난날의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초토화 된 모습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210동의 주택이 침수되거나 무너졌으며, 주택 수십 채는 집터만 남았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큰 서면은 620여가구 1,400여명이 살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으나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어 지금은 모두 재개발을 해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중앙부처와 우리 도의 집행부 그리고 국회의원과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다녀가셨기에 복구계획 수립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기에 본 피해지구에 대한 복구가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어 많은 피해자들의 상처가 전화위복을 통해 따뜻한 보금자리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전력투구해 주실 것과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완벽한 시공으로 영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일어난 태풍피해 지구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될 수 있을까 하여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에 중앙본부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번 울릉군 서면의

피해는 그 피해 규모나 심각성으로 보아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섬에 살고 있는 자들의 이주를 방지하고 영토적 개념으로 우리가 국토의 일부분을 지키고 산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듯이 본토에 살거나 섬에서 살거나 똑같은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하면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섬에 사는 것만으로도 많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데 피해가 웬 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곳에서라도 피해가 나면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복구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울릉군 서면지역의 가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부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주택복구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반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된다면 모두가 포기를 하고 육지로 이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복구 공사비가 육지가 평당 200만원이면 이곳은 평당 400만원이 되어야 건축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골자재를 육지에서 반입하여 공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설 사업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러지고 바람에 날아가고 물에 떠내려 간 것을 고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일진데 우리 행정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원만한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많은 지원이 되어 피해주민들의 애환을 씻어 주고 놀라 얼어붙은 마음을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울릉도에는 섬 전체 일주도로가 총 44.2KM에서 39.8KM는 개통이 되고 미개통지구가 4.4KM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번 피해시에 산사태 등으로 도로가 차단되어 피해가 없는 북면에 사는 사람들이 병원이나 생필품 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으로 하루속히 유보된 구간이 개통되어 이러한 이중고의 어려움은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울릉도의 일주도로는 단일도로이면서 지방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가 관리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국도로 승격을 시켜 중앙부처에서 맡아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 군민 모두가 요망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도로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릉군 서면 일대의 모든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빠른 시일내에 견고하고 항구적인 시설로 복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김순견의원 ◎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국내의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세계 석유 대란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97%, 에너지 중에 석유 의존도가 약 80%에 이르는 세계 제6위의 석유소비 대국인 점을 감안한다면 오일쇼크 차원의 고유가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차원의 에너지 대책에 부가하여 경상북도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및 절감대책을 하루 빨리 세우고 에너지 위기발생 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비상사태 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유가로 인하여 지금 당장 시급히 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즉 유류가격이 오르면서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는 도내 농업 및 어업인들의 경비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농어민들은 지금 현재 고유가로 인해 생계비마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그야말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은 1년 전에 비하여 약 25% 가량 치솟았고, 각종 농작업 인건비 역시 10% 이상 인상되는 등 높은 생계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농·수산물 가격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더해지고 있는 와중에 고유가로 인한 불투명한 장래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유류급등은 농어민들이 농·어업 경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면세유 가격이 지난 해에 비해서 두 배 가량 올려놓았으며, 이에 비하여 개인별 사용량도량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등 농어민들의 고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경유의 가격은 연초에 비하여  $\ell$  당 180원 가량 올랐고, 도내 전체적으로 수십 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농가들을 중심으로 유가급등으로 인한 경쟁적 어려움은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시설농가들은 기존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꾸어 가고는 있지만 최소한 1,000~2,000만원 가량의 교체비용이 드는 등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어업인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양식장 모터펌프 등 주로 사용되는 저경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히 모든 선박에 공급되는 고경유의 경우 현재 200 $\ell$  한 드럼 당 9만9,000여원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이는 지난 1월 7만9,240원에 비해 25.7%인 2만380원이 올랐고, 지난 해 1월 6만6,260원에 비해 50.3%인 3만3,360원이나 인상된 가격입니다. 이는 적정공급 가격으로 알려진 6~6만5,000원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인 것입니다. 때문에 소형어선을 운영하는 경우 유류대금이 출어경비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 면세유 가격인상은 곧 출어 경비 증가로 인해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동해안의 어획고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경북의 동해안 어민들은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실제 올 들어 지난 달까지 포항과 구룡포 수협 등 두 개의 수협을 통해 전체 오징어 위판량은 4,166톤 약 88억4,000여만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935톤 111억3,100여만원 보다 어획량은 약 16%, 어획고는 21% 가량 감소된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금 경북 동해안의 어민들은 어선을 출어하는 데 드는 기름값을 제외하고 나면 선원들에 대한 기본급을 줄 형편도 되지 않아 사실상 적자조업에 시달리고 있거나 아예 출어마저 포기하고 있는 어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포항 구룡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의 각 항구와 포구에는 하루 평균 200~300여척의 소형어선들이 기름값 때문에 마냥 정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장기화되면서 늘어나고만 있는 경북의 농업인과 어업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북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당장 농·어업인에게는 생존권 차원의 문제인 만큼 그 대안으로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그나마 최소한의 생계비를 위한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 경영 및 농어촌 경제의 어려운 실정을 다소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할 것으로 보는 바, 현재 농·어업 분야에 지원되고 있는 면세 유류대 중 휘발유, 실내등유, 경유, 윤활유 등을 대상으로 도비 5%, 시군비 5% 등 총 10% 정도를 지원하고 이를 농협과 수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유가 인상에 유류대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고충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비를 절감케 하고 동시에 시름에 잠겨 있는 농·어업인의 사기를 앙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실시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장하숙의원 ◎

안녕하십니까?

영주출신 기획과학위원회 소속 장하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시·도별로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우리도에도 한국 도로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 및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이 시점에 각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유치전략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이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번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 도시 건설에 대한 중심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에게 주어진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는 사과·복숭아·포도 등이 전국 제일의 재배면적을 자랑하는 주산지입니다. 사과면적이 1만6,778ha로 전국 64%, 복숭아가 7,373ha로 전국 46%, 포도 1만763ha로 전국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유리한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도는 사과·포도·복숭아 등 특화품목 육성에 대하여 과거부터 특단의 지원대책 없이 기존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지방화 시대를 맞아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에 이러한 특화품목들이 국내적으로는 타시도, 시군들의 고품질 과실생산 육성기반 조성과 신재배의 기술재배로 거센 도전을 받고 있고, 국외적으로는 한·칠레 FTA 협상타결, 중국과의 쌀협상 과정에서의 사과·배 품목에 대한 수입검역절차 이행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때맞춰 우리 경북 도내 사과 주산지인 15개의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28일 영주시에서 지방화에 대처하고 과수산업 공동발전방안을 모색 하고자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발족하였고, 중앙정부에서는 한·칠레 FTA 협상타결 이후 1조2,000억원이라는 FTA 특별기금을 마련, 2004년에서 2010년까지 과원폐원 희망농가에 대한 폐업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각 지자체마다 과수산업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생산 기반조성 사업, 거점단지, 유통센터 설치사업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반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에서는 수입허용 품목에 대하여 폐업을 통한 다른 작목 조기전환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해 보고자 FTA 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을 조기추진해 줄 것과 지방자율계획사업, 국고융자금 융자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전환 지원해 줄 것을 경북도와 농림부에 건의하였으며, 경북도에 사과주산지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 보고자 과수업무 전담기구 설치를 경북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과수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과수산업 공동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제1의 과수 단지로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고, 어떠한 개방화 체제에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고 과수 산업 구조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로 농촌이 생활 정주·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특화품목과 연계하는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발굴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임원식의원 ◎

울진 출신 임원식의원입니다.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6일 태풍 나비의 강타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망하신 분들에게는 삼가 조의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상태, 정무웅의원님들께서... 아마 울릉도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박영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해서 복구작업에 참여를 하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울릉도가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 이의근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에 재해특별지역 선포를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에 8,600억, 2003년 7,000억, 2004년 작년도에 1,400억, 금년도에 벌써 1,100억 이상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명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망 2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지역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약 4년간 입었는데, 결국 중앙정부에서 소방방재청을 신설했습니다. 소방방재청 신설의 목적은 뭐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축소시키고, 또 이 일들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신설한 소방방재청이... 우리 경상북도에 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첨단시설로 바꾸는 이 관제시스템, 우리 경상북도 전역에 5개 시·군밖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하면 6개 지역입니다.

포항 지역 남구, 북구를 갈라서 약 20개 지역이 아직 첨단시설로 교체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20개 지역에 예산이... 1개 지역의 관제시스템을 첨단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면 5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20개 지역이면 1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은 50%입니다. 그러면 50억입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16개 시도 중에서 약 500억 국비지원만 되면 이 첨단시설로 교체가 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조기에 이 첨단시스템을 설치해야 됩니다. 어느 예산보다도 이 예산은 우선적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우리 도의 이의근 지사께서 집행부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세요. 촉구 하셔서 이 20개 지역에 우리 경상북도의 첨단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번 9월6일 태풍 나비 피해 이후에 9월7일날 울진~덕구간 지방도

삼성교 교량 끝의 침하지역 붕괴된 지역에 가서 보았습니다. 아마 경북의 다른 타 지역도 이런 예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2003년 12월1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아마 근본적으로 수해예방 대책을 세워달라고 질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지사 께서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나비 태풍에 약 300mm 미만의 비가 올진 지역에 왔습니다. 그런데도 다리 난간이 침하되어서 붕괴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울릉도 같은 데는 약 700mm가 왔지 않습니까? 적어도 700mm 이상 비가 왔을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현지의 아마 삼성교 침하된 지역에 직접 가서 안전진단을 해서, 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약 700mm 이상 비가와도 견딜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실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에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있다고 하면 경북 전역을 조사를 하고 현황과악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는 강력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 ● 조례안 : 3건

- 경상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9월 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80,000”을 “110,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1일당 <u>80,000</u> 원으로 한다. | 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① -----<br>----- <u>110,000</u> -----<br>----- . |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9월 1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로 하고,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으로 하며, 제5조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교육위원 회기수당 지급 기준표

| 구 분  | 회의수당 지급액   |           |
|------|------------|-----------|
|      | 회기수당       | 원격지회의출석비  |
| 교육위원 | 일 110,000원 | 일 54,300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           | 개정안                            |            |           |
|--------------------------------|-----------|-----------|--------------------------------|------------|-----------|
| [별표 2]<br><br>교육위원 회기수당 지급 기준표 |           |           | [별표 2]<br><br>교육위원 회기수당 지급 기준표 |            |           |
| 구분                             | 회의수당 지급액  |           | 구분                             | 회의수당 지급액   |           |
|                                | 회기수당      | 원격지회의출석비  |                                | 회기수당       | 원격지회의출석비  |
| 교육위원                           | 일 80,000원 | 일 54,300원 | 교육위원                           | 일 110,000원 | 일 54,300원 |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9월 1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40인”을 “60인”으로 한다.

제9조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중 “10인”을 “15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60인”을 “90인”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개정이유                                                                                                             |
|----------------------------------------------------------------------------------------------------------------------------------------------------------------------------------------------------------------------------------------------------------------------------------------------------------------------------------------------------------------------------------------------------------------------------------------------------------------------------------------------------------------------------------------------------------------------------------------------------------------------------------------------------------------------------------------------------------------------------------------------------------------------------------|----------------------------------------------------------------------------------------------------------------------------------------------------------------------------------------------------------------------------------------------------------------------------------------------------------------------------------------------------------------------------------------------------------------------------------------------------------------------------------------------------------------------------------------------------------------------------------------------------------------------------|------------------------------------------------------------------------------------------------------------------|
| <p><b>제6조(구성)</b></p> <p>① 생략</p> <p>②위원회의 정원은 <u>40인</u> 이내로 하고 위원<br/>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br/>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br/>한다.</p> <p><b>제9조(운영)</b>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br/>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br/>찬성으로 의결한다. <u>가부동수인 경우</u><br/><u>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u></p> <p><b>제10조(분과위원회의 설치등)</b></p> <p>① 생략</p> <p>②분과위원회의 정원은 <u>10인</u> 이내로<br/>한다.</p> <p>③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br/>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u>다</u><br/><u>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는</u><br/><u>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b>제11조(전문위원)</b></p> <p>①위원회에 <u>60인</u>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br/>수 있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br/>만, 보궐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br/>잔여임기로 한다.</p> <p>②~④ (생략)</p> <p><b>제12조(간사 등)</b></p> <p>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br/>둔다.</p> <p>②간사와 서기는 도지사가 그 소속 공<br/>무원중에서 임명한다.</p> <p>③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br/>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br/>보조한다.</p> | <p><b>제6조(구성)</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60인</u> -----<br/>-----<br/>-----<br/>-----</p> <p><b>제9조(운영)</b> -----<br/>-----<br/>----- <u>&lt;삭제&gt;</u></p> <p><b>제10조(분과위원회의 설치등)</b></p> <p>①(현행과 같음)</p> <p>②----- <u>15인</u> -----<br/>-----</p> <p>③ -----<br/>-----<br/><u>&lt;삭제&gt;</u></p> <p><b>제11조(전문위원)</b></p> <p>① ----- <u>90인</u> -----<br/>-----<br/>-----<br/>-----</p> <p>②~④ (현행과 같음)</p> <p><b>제12조(간사 등)</b></p> <p>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br/>둔다.</p> <p>②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br/>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p> <p>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br/>시할 수 있다.</p> <p>④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고<br/>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p> | <p>능력있는<br/>외부인사<br/>다수영입</p> <p>인재풀제<br/>운영</p> <p>능력있는<br/>외부인사<br/>다수영입</p> <p>간사의<br/>직위와<br/>역할<br/>구체화</p> |

● 동의안 : 1건

○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에 관한건

#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에 관한건

|            |  |
|------------|--|
| 원 안<br>번 호 |  |
|------------|--|

제출일자 : 2005. 9.

제출자 : 경상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지역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울진에 건립 중인 『경북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생물자원과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양신소재산업, 해양심층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 『경상북도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재단법인을 설립코자 함.

## 2. 주요골자

- 법인 명칭 :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 법인소재지 :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688-3번지
- 설립자본금 : 2억원(도 1, 울진군 1)
- 임 원 : 14명(이사 12, 감사 2)
- 주요사업
  - 해양생명환경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 해양생물환경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보육지원
  - 해양생물환경산업 관련 유통망 구축, 기술경영지도, 데이터베이스사업 등

## 3.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에 관한 승인건 : 붙임

## 4. 관련규정

- 『경상북도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법인설립의 보고 등)
  - ① 도지사는 첨단산업에 관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 2.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
    - 3. 기타 도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지역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제8조(주관기관 등)
  - ② 주관기관 등의 구체적인 자격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관리지침(주관기관)
  - 주관기관의 자격은 재단법인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법인 설립 등 준비가 필요 할 경우에는 설립 후 이관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주관할 수 있다.

## 5. 참고자료

- 경북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 건립 계획 : 붙임
-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조직도 : 붙임

##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에 관한 승인건

경상북도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생물자원과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양신소재산업, 해양심층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8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 □ 의결사항

- 법인 명칭 :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 법인소재지 :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688-3번지
- 설립자본금 : 2억원(도 1, 울진군 1)
- 임원 : 14명(이사 12, 감사 2)
- 법인사업
  - 해양생명환경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 해양생물환경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보육지원
  - 해양생물환경산업 관련 유통망 구축, 기술경영지도, 데이터베이스사업
  - 해양생물환경산업 관련 단체 협의회 운영
  - 해양생명환경산업분야의 연구개발, 기획 및 조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 등

## 경북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 건립 계획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생물환경자원의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해양바이오산업의 생산기반 구축

### □ 사업개요

- 위 치 :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 사업규모 : 부지 10,000평, 건물 2,450평
- 사 업 비 : 233억원(국비 83, 도비 47, 군비 87, 기타 16)  
※ 건축비 94, 장비구입비 65, 운영비 24, 부지 50(현물)
- 사업기간 : 2004~2007(4년)
- 사업내용 : 연구개발, 창업보육, 기술보급, 장비이용 등
- 주요시설(2,450평) : 연구실험동(1,000평), 파일럿플랜트(1,000평),  
장비창고(300평), 직원숙소(150평) 등

### □ 추진상황

- '00. 12 :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원 건의(도 → 산자부)
- '01. 7 : GMSP조성 약정 체결(5개 기관)
  - 도지사, 울진군수,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 한국해양연구원장, 포항공대총장
- '02. 1 : 해양생명환경산업지원센터건립 계획 확정(산자부)
- '04. 2 : GMSP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센터가 협소하여 건축규모 확대(1,000 → 2,450평)
- '04. 11 : GMSP 부지조성 실시설계 완료
- '05. 2 : 시행 인가 및 건축설계 착수
- '05. 5 : 부지조성공사 착수('05. 9 완료 예정)
- '05. 8 : 지역산업진흥사업(해양센터) 2차년도 협약체결

## □ 향후계획

- '05. 9 : 발기인 총회
- '05. 9 : 법인설립허가신청(산업자원부장관)
- '05. 10 : 법인설립등기, 업무이관(경북TP), 업무개시
- '05. 11 : 건축공사 착수('06. 12 완료 예정)

## □ 연도별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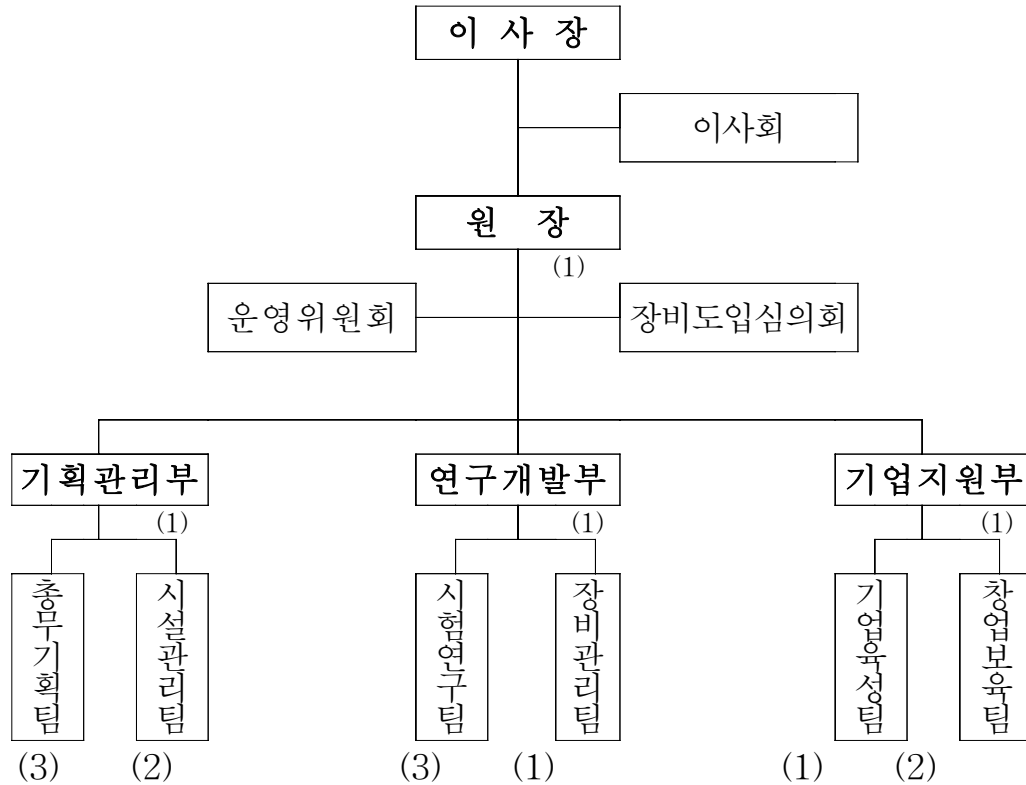
(단위:백만원)

| 구 분  |    | 재 원 별  |       |       |       |       | 비 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
| 계    | 계  | 23,300 | 8,300 | 4,700 | 8,700 | 1,600 |     |
|      | 현금 | 18,300 | 8,300 | 4,700 | 3,700 | 1,600 |     |
|      | 현물 | 5,000  |       |       | 5,000 |       |     |
| 2004 | 현금 | 1,200  | 400   | 400   | 400   |       |     |
|      | 현물 | 5,000  |       |       | 5,000 |       |     |
| 2005 | 현금 | 5,950  | 1,400 | 1,775 | 2,775 |       |     |
|      | 현물 |        |       |       |       |       |     |
| 2006 | 현금 | 8,140  | 4,290 | 2,450 | 450   | 950   |     |
|      | 현물 |        |       |       |       |       |     |
| 2007 | 현금 | 3,010  | 2,210 | 75    | 75    | 650   |     |
|      | 현물 |        |       |       |       |       |     |

※ 보조비율 : 국비 36%, 도비 20%, 군비 37%, 기타(민자) 7%

#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조직도

## □ 조 직



## □ 정 원

| 구 분   | 계  | 원 장 | 파 건 | 연 구 원 | 일 반 직 |
|-------|----|-----|-----|-------|-------|
| 인원(명) | 16 | 1   | 4   | 7     | 4     |

## □ 부서별 정원

| 구분<br>부서명  |      | 계  | 연 구 원 |                      |    |    | 파견공무원 |                      | 일 반 직 |    |     | 비고 |
|------------|------|----|-------|----------------------|----|----|-------|----------------------|-------|----|-----|----|
|            |      |    | 전임    | 파견                   | 박사 | 석사 | 5-6급  | 6-7급                 | 팀장    | 팀원 | 기능직 |    |
| 총계         |      | 16 | 1     | 2                    | 4  | 3  | 1     | 1                    | 1     | 1  | 2   |    |
| 원 장        |      | 1  | 1     |                      |    |    |       |                      |       |    |     |    |
| 기 획<br>관리부 | 총무기획 | 4  |       |                      |    |    | (부장)  | <sup>1</sup><br>(팀장) |       | 1  | 1   |    |
|            | 시설관리 | 2  |       |                      |    |    |       |                      | 1     |    | 1   |    |
| 연 구<br>개발부 | 시험연구 | 4  |       | <sup>1</sup><br>(부장) | 3  |    |       |                      |       |    |     |    |
|            | 장비관리 | 1  |       |                      | 1  |    |       |                      |       |    |     |    |
| 기 업<br>지원부 | 기업육성 | 2  |       | <sup>1</sup><br>(부장) |    | 1  |       |                      |       |    |     |    |
|            | 창업보육 | 2  |       |                      |    | 2  |       |                      |       |    |     |    |

● 결의안 : 3건

-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전국체육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
|----------|-----|
| 의안<br>번호 | 328 |
|----------|-----|

제안년월일 : 2005년 9월 12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경상북도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 주도적으로 추진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제안이유

-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국가재도약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임
- 이에 따라 도내 농어촌과 도시, 북부권과 동부권 등 권역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지역을 활성지역으로 전환함은 물론 도시 대비 농어촌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방이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 3. 내 용

-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7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 추천으로 한다.

-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과학전문위원으로 한다.
- 위원의 활동기간은 2005년 9월 13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노인 및 장애인 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
|----------|-----|
| 의안<br>번호 | 329 |
|----------|-----|

제안년월일 : 2005년 9월 12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경상북도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 및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복건복지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 노인및장애인 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제안이유

-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 되고, 각종 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욕구가 크게 다양해지고 있으나, 제도적인 불안정성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 하게 노정되고 있음.
- 도내 34만 9천여명의 노인과 11만 4천여명의 장애인에 대한 요양시설 확충과 요양보장제도 도입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평등한 사회참여와 인간다운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정책방향 설정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종합적 복지정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및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 3. 내 용

- 노인및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7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 추천으로 한다.
- 노인및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의 보좌 전문위원은 행정사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 위원의 활동기간은 2005년 9월 13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전국체육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     |
|----------|-----|
| 의안<br>번호 | 330 |
|----------|-----|

제안년월일 : 2005년 9월 12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 1. 주 문

2006년 10월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87회 전국체육대회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경상북도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경상북도의회 전국체육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제안이유

- 제87회 전국체육대회가 경상북도 주관(대한체육회 주체)으로 2006년 10월중 김천시를 비롯한 도내 일원에서 개최함에 따라 그동안 전국체전준비 기획팀을 구성하여 대회준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 대회개최를 위한 경기장 개보수, 시가지 및 연개도로망 확충, 대회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인력충원, 숙박시설, 기반도로 및 부대시설 등 제반적인 예상문제점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색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하고,
- 대회지원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성공적인 전국체육대회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전국체육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3. 내 용

- 전국체육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7명으로 구성하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 추천으로 한다.
- 전국체육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의 보좌 전문위원은 경제문화전문 위원으로 한다.
- 위원의 활동기간은 2005년 9월 13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특별위원회 위원구성

□ 구성근거 :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9조2항

□ 특별위원회별 위원 수

-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 7명
- 노인및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 : 7명
- 전국체육대회지원 특별위원회 : 7명

□ 특별위원회별 위원 현황

| 구 분  | 지역균형발전<br>특별위원회 | 노인및장애인복지<br>특별위원회 | 전국체육대회지원<br>특별위원회 | 비 고 |
|------|-----------------|-------------------|-------------------|-----|
| 인 원  | 7명              | 7명                | 7명                |     |
| 기획과학 | 양재경<br>김기홍(간사)  | 장하숙               | 정무웅               |     |
| 행정사회 | 황상조             | 김석호               | 이상태(간사)<br>김진기    |     |
| 교육환경 | 김준호<br>이우경      | 권준택               | 김응규(위원장)          |     |
| 농 정  |                 | 이상호(위원장)<br>정상진   | 신영호               |     |
| 경제문화 | 우성호             | 임원식(간사)           | 한혜련               |     |
| 건설소방 | 이종철(위원장)        | 김기대               | 이현준               |     |

● 규칙안 : 1건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철 우

2005년 9월 13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의안의 제출시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의안의 제출시기)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할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3조제4항은 삭제한다.

제73조의2(도정에 관한 질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도정에 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 또는 도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도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도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을 마친 후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한다.

- ③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답변요지서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기타 도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기재한 별지 1호 서식의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출석요구서 및 질문요구서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③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하고 한 의원의 질문시간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7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긴급현안 질문요구서

|           |  |                        |    |  |
|-----------|--|------------------------|----|--|
| 질문<br>일자  |  | 출석요구<br>공무원<br>(임직원 등) | 소속 |  |
|           |  |                        | 직위 |  |
|           |  |                        | 성명 |  |
| 이유 및 질문요지 |  |                        |    |  |
|           |  |                        |    |  |

붙임 : 요구자 서명 명부

200 . . .

질문의원 : 의원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

요구자 서명 명부

[illegible]

## 신 · 구 조문 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신 설)                                                                                                                                                                    | 제20조의2(의안의 제출시기)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할 의안은 매회기 집회일 10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제73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br>①(생략)<br>②(생략)<br>③(생략)<br>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도지사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 제73조(도지사 등의 출석요구)<br>①(현행과 같음)<br>②(현행과 같음)<br>③(현행과 같음)<br>④(삭제)                                                                                                                                 |
| (신 설)                                                                                                                                                                    | 제73조의2(도정에 관한 질문) ①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교육행정을 포함한다)또는 도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도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br>②도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을 마친 후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한다. |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p>③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답변요지서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기타 도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p>                                                     |
| (신설) | <p>제73조의3(긴급현안질문)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 질문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출석요구서 및 질문요구서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 <p>③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⑤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60분으로 하고 한 의원의 질문시간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7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p> |

## **의정활동보고서(제201회 임시회)**

2005. 9 인쇄 / 2005. 9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